2015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롤로그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등, 그 기준을 현장에서 찾다

일시 : 2015년 4월 24일(금) 13 : 00 ~18 : 00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101호

주최 : 한국아동권리학회

후원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 인 사 말 ■■■

한국아동권리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작하였지요. 이는 실천현장이나 학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이 특례법의 실효성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인 가정과 육아지원기관에서조차 아동학대와 훈육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권리학회는 2015년 한 해를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찾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아동학대 개입현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찾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내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천현장과 학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과 접근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판정 현장에 대한 논의는 이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다루고자 하는 추계학술대회를 위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찾는 작업을 올 한 해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24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황 옥 경 배상

■■■ 춘계학술대회 일정 ■■■

12:20~13:00	접수 및 안내
13:00~13:10	개회사 황옥경 회장 (한국아동권리학회)
13:10~13:50	기조강연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 Child Abuse as Child Rearing Casualty 홍 강 의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사회 :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학과)
13:50~15:50	주제발표 학대의 판단과 딜레마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안 윤진영 경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행위의 법률적 재조명 황은영 검사(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통해 본 아동학대 최은주 판사(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의 변화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5:50~16:10	휴식 및 포스터 발표
16:10~17:40	종합토론 좌장 : 안동현 교수 (한양대학교 소아정신과) 토론 : 김경희 교수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홍관표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인 교수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남희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채혜정 교수 (명지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17:40~18:00	Floor 자유토론 및 종합정리

■■■ 목 차 ■■■

기조강연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 Child Abuse as Child Rearing Casualty
홍 강 의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 11

주제발표

1. 학대의 판단과 딜레마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43
윤 진 영 경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 아동학대행위의 법률적 재조명 ····· 53
황 은 영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3.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통해 본 아동학대 ····· 73
최 은 주 판사 (서울가정법원)

4.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의 변화 ····· 83
장 화 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종합토론

종합토론 ····· 123
좌장
안동현 교수(한양대학교 소아정신과)
토론자
김경희 교수(목포대학교 아동학과) ····· 125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32

장영인 교수(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42
도남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148
채혜정 교수(명지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 152

포스터 논문

1. 영유아보육프로그램 활동목표의 내용요소 및 진술방법 분석 ····· 161
강경란(인하대학교) ● 이완정(인하대학교)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의 관계 ····· 163
권미나(전북대학교) ● 이진숙(전북대학교)

3. 유아의 수면 습관이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165
김수정(숙명여자대학교)

4. 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와 삶의만족도가 일몰입에 미치는 영향 ····· 167
송주연(춘해보건대학교) ● 조준오(부산대학교) ● 강인설(춘해보건대학교)

5. 자유선택활동을 위한 교사의 흥미영역별 교수방법 연구 ····· 169
이지은(인하대학교) ● 이완정(인하대학교)

6. 영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의 특징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3차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분석을 기초로 ····· 171
전가일(장안대학교)

7.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 173
조여울(건국대학교) ● 권희경(건국대학교)

8. 저소득가정 만3세를 위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175
조여울(건국대학교) ● 권희경(건국대학교)

9.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177
조용남(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

10.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 기초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개발 ····· 179
홍애리(호서대학교 부속유치원) ● 최우수(중앙대학교) ● 김도영(호서대학교)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
Child Abuse as Child Rearing Casualty

홍 강 의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

Child Abuse as Child Rearing Casualty
- Proposal of A New Perspective -

홍 강의
서울의대 명예교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초대회장

한국아동권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서론;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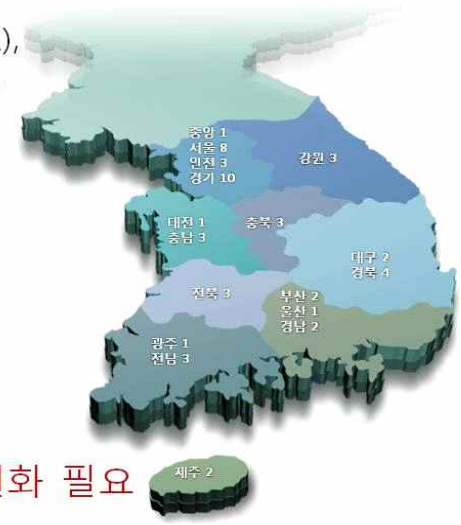
- 올 초 인천 한 어린이 집 보육교사가 4살짜리 얼굴을 손으로 내갈김. 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 ???
- 전국 어린이 집; 총 43,752- 영유아 140만 9000명 돌봄
  어린이 집 지난 20년간 8배 늘어남: 누리과정, 사랑방역할
  보육교사의 자질, 자격, 대우 논란, 누구를 위한 어린이집?
  학대행위자 중 보육교직원 3%, 유치원교사 0.8% 차지
-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립(1989)되고 아동복지법개정(2000) 범국가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계속 증가(3배)
- 지난 15년간 예방,개입이 효과적이었나?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부족했나? 재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 대부분 학대는 가정 내: 부모 80.3%, 조부모/친인척 5.2%
  → 부모자녀간 관계, 양육, 훈육, 부모역할 차원의 문제?

아동학대예방 국내 역사

- 1961. 아동복리법: 아동학대 항목 포함
- 1979. 세계아동의 해: 서울시립상담소 아동학대 고발센터
- 1985. 서울 시립상담소에 아동학대 신고센터
- 1989. 아동학대 예방협회 창립
- 1991.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가입
- 19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0. 아동복지법-학대예방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중앙 1, 지역 17→56)
- 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개입/예방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56개소),
  피해아동쉼터(58개소)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복지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WE Start, Dream Start
-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상담소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창구의 통합-일원화 필요

우리나라 아동학대현황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사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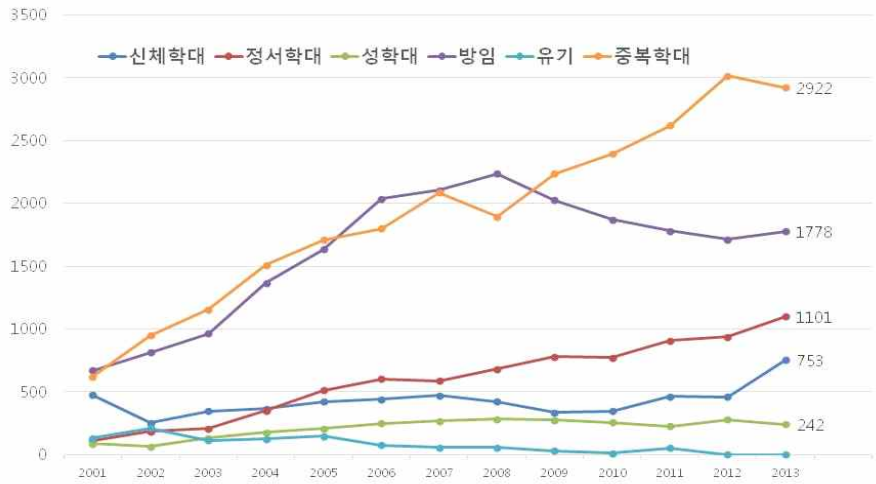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11.1%
2. 정서학대 16.2%
3. 성 학대 3.6%
4. 방임 26.2%
   신체, 정서, 건강, 교육
5. 유기
6. 중복학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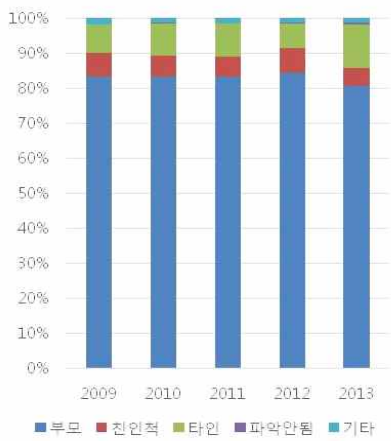
학대유형별 사례수 변화



피해아동 가족유형

- **친부모가족 38%**
- **친부모 외 가족형태 50.4%**
  부자가정 20.0% 모자가정 14.4%, 미혼부모 2.3%
  재혼가정 7.0% 동거 3.0% 친인척보호 3.5%
  소년소녀가정 0.3%
- **대리양육형태 5.9%**
  가정위탁 0.3% 입양가정 0.4% 시설보호 5.2%
- 기타 0.7%
- 파악 안됨 5.0%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부모	80.3%
친인척	5.2%
대리양육자	11.6%
타인	1.3%
기타	1.8%

학대부모의 특징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2.6%)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2.4%)
- 부부 및 가족갈등 (9.4%)
- 성격 및 기질문제 (7.1%)

아동학대의 원인적 요소

1. 피해자 요소(피해아동의 특성)
2. 가해자 요소(학대부모의 특성)
3. 가정적 요소
4. 사회-문화적 요소

1. 아동 요소(피해자 특성)

<아동학대보고서
복지부 2013>

- 장애 3.5%
- 정서, 정신건강 31.6%
- 적응, 행동 35.5%
- 발달,신체건강 11.9%
- 특성 없음 15.9%
- 기타 1.6%

<문 헌>

- 미숙아
- 사회적 반응의 결핍
- 기형아; 신체적 외모 문제
- ADHD, 지적 장애, 뇌손상
- 까다로운 기질,
  고집스런 울음,
- 발작적인 복통 → 학대
- 수동적, 처진 아이→ 태만

2. 가해자 요소(학대부모의 특성)

1. 부모자신이 학대 받은 과거력
2. 공격성의 관찰, 반사회적 행동의 포상, 어린 시절에 노출, 경험한 폭력 → 부모가 되어 부모자식간의 갈등을 다루는데 공격적 전략을 취함.
3. 부모로부터 거절 → 처벌적(학대), 방임적 아동양육
4. 모성의 돌봄 결핍, 정서적 방임 경험→ 학대부모에서 역할 바뀜이 관찰됨
5. 아이를 돌봄, 부모역할의 사전 연습 경험의 부재 10대 모에서 학대 높음
6. 부모가 되었을 때 아동의 발달(행동특성,순서,시기)에 무지
7. 아동의 미성숙과 어른처럼 행동할 수 없음을 인정 못함

3. 가정적 요소

- 가족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 적음
-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적, 고집행동 이 폭발적으로 일어남 →부모-아동간의 갈등과 공격성의 악순환 → 아동학대 발생
- 부모의 처벌적 태도 → 훈육에 대한 도전적, 반항적 행동을 증가시킴
- 부부논쟁의 해결방법으로 공격적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은 아동 훈육에도 같은 전략 사용.
- 배우자가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자식에게서 사랑과 돌봄을 얻으려 함(역할 바뀜) →기대에 못 미치면, 좌절 → 학대

4. 사회-문화적 요소

- 학대사례 중 반에서 학대 발생한 바로 그 해 부가 실직. 실직은 학대 가정과 비학대 가정을 구분하는 단일 요소
- 지지체계(친족, 이웃, 종교) 미약
- 스트레스 해소방법 모르고, 도움을 구할 친구/친척 없음
-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
- 높은 수준의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 체벌이 양육기술로서 주로사용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는 사회
- 여성의 사회진출, 커리어, 자기중심적 삶의 추구 → 아동양육에 있어서 모성애, 모성 역할에 대한 가치, 책임감 희박/감소.

학대현상의 이해

- **생태학적 모델** Ecological model
- **체계론적 모델** Systems model
- **발달학적 모델** Developmental model

  학대아동-부모 적응문제(Goodness of fit)→
  상호작용문제 →발달과제 수행 실패

  영유아기: 유기, 방임, 성장중단, 애착장애
  걸음마기: 체벌, 과잉통제, 신체학대, 정서학대
  학령전기: 부부불화, 성학대, 신체/정서학대
  학령기: 학습장애,등교거부,따돌림, 신체/정서학대
  청소년기; 가출, 반항, 갈등, 신체/정서/성 학대
- **애착이론 모델** Ethological model

영아기 養育의 문제

- 원하지 않는 임신, 원하지 않는 아이
- 양육의 거절과 회피, 아기를 보살핌 없이 생존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 부족
- 양육방법의 변화와 혼돈, 교육부재
- 여성의 커리어/사회진출, 자아실현 중시
- 모성적 헌신/책무감 감소



유기, 방임, 학대
애착형성의 문제, 불안정 애착
발달전반에 악영향

걸음마기 훈육의 문제

- 훈육과 학대 구별 못하고 일차적 훈육방법으로 체벌사용, 물리적, 신체적 훈육 외 기타 방법 모름
  → 상당수 아동 상습적인 체벌 경험
- 부모중심적 과잉통제: 부모 맘대로 안되면 체벌
  "관심과 훈육의 표현", "버릇 고치기" "사랑의 매"-
  실제로는 훈육 빙자한 분노 좌절의 표현
- 아동의 인격, 개체성, 권리 불인정, 부모 소유물로 생각
- 훈육의 주목표의 오해: 참기, 기다리기, 포기 등 자기통제력, 할 수 있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구별 가르치기 대신 지능개발, "조기교육", 경쟁력 향상에 주력 (IQ > EQ)
- 부모가 체벌을 문제 해결방법,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동은 이를 학습, 자신의 자식양육에 사용(대 물림)

학령전기의 문제

- 다양한 경험 부족→ 문화결핍증
- 전통과 관습, 윤리, 사회규범 학습 결여
- 감정의 이해와 언어적 표현 가르침 부족
- 예의, 범절 교육 실종
- 대인관계 기술, 사회성 계발 경시
- 부모중심사고 (욕심,극성,지식교육):
  - → 놀이, 또래접촉 저하
  - → 공부에 대한 혐오, 공포, 스트레스 유발
  - → 자신의 활동에 대한 주도성, 적극성 미발달

학대예방,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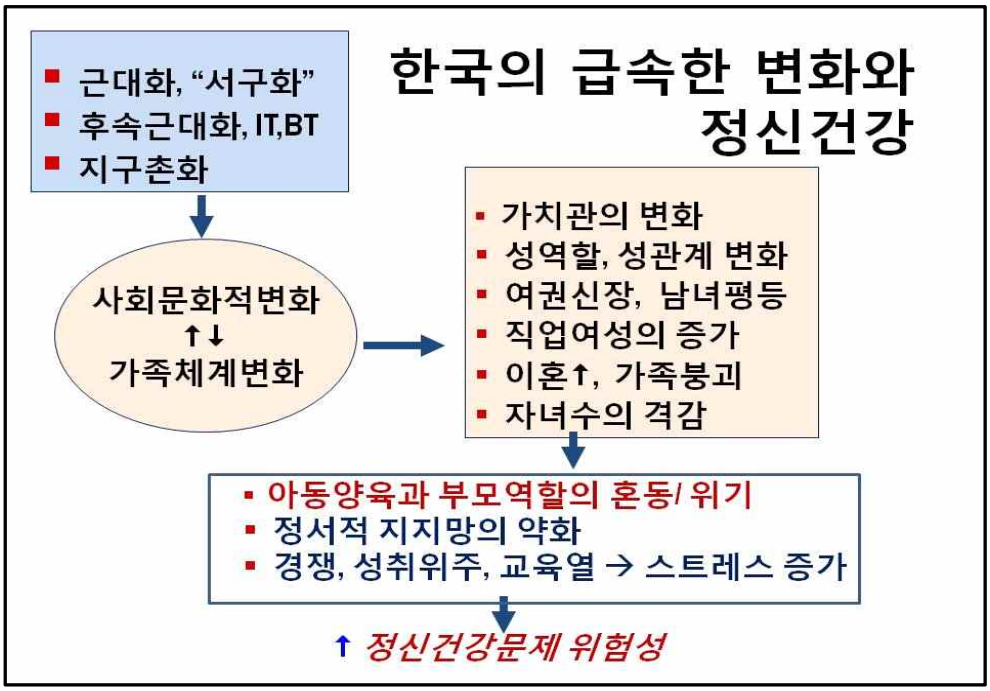
- **사례 발견과 신고의 증가** :
  - 국민의식 향상(?): 학대현상 존재, 범죄시
  -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 아직도 30%만 신고
- **실제 학대발생 증가** (발견된 수의 5배로 추정)
  - 불화, 이혼, 가정해체
  - 사회문화적 변화, 사회생활 스트레스 증가
  - 경제상태의 상대적 박탈감
  - 여성의 직업, 사회진출, 보육체계 미비
  - 인생목표, 가치관의 변화: 성취위주, 황금 만능 등
  - 양육에 대한 동기, 책임감, know-how 부족
- **학대개입 정책, 입법, 실행의 비체계적/비효율적 운영**
  - 개입기관의 난립: 부처마다 각각, 엊 비슷한 기능, 부처이기주의
  - '보육'기관 증설: 질의문제, 자체생존 위주, 양육자의 책임회피
  - 관련 '전문가'집단, 활동의 난립과 협업부재, 누구를 위함?
  - 예방활동의 핵심 표적, 일차예방(올바른 양육)의 부재/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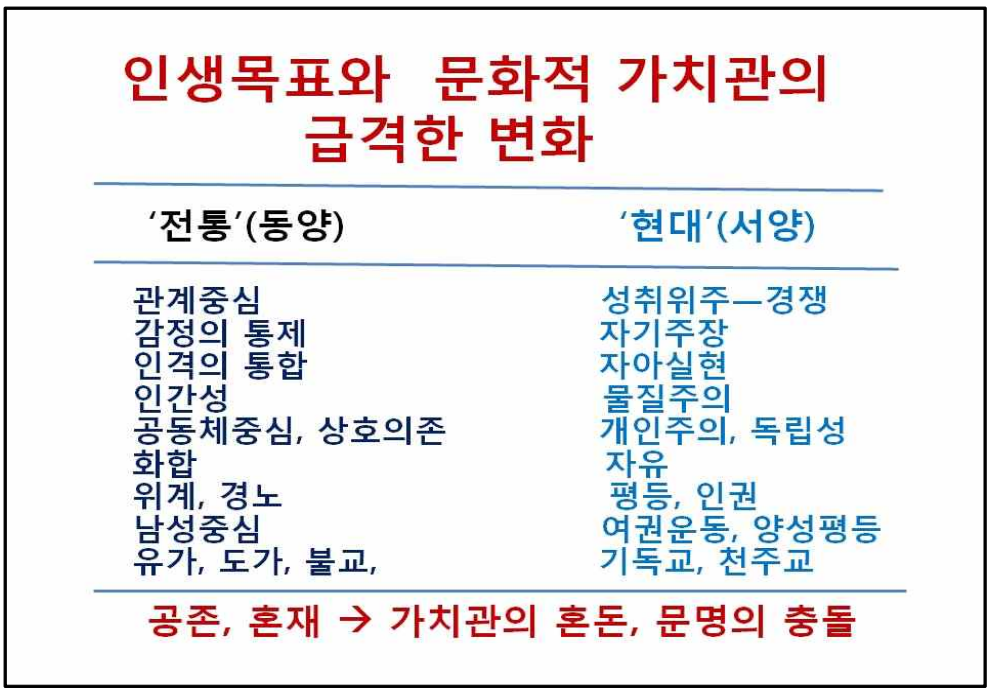
아동양육의 변화와 위기

1. **원하지 않는 임신/ 아이의 증가**: 각종 정서,행동장애
2. **아동양육의 회피와 거절** : 방임, 반응성 애착장애
3. **양육방법의 무지, 부적절성**: 아동학대/방임
4. **부적절/불충분한 훈육** : 과잉보호- 품행장애
   과잉통제- 우울, 틱장애, 학대
5. **직장모의 증가와 대체양육체계의 부족**
6. **성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변화**
7. **성적위주 과잉교육열**; 스트레스, 시험불안, 입시경쟁

양육위기의 원인적 요소

1. 가족체계변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격감
2. 직장모의증가, 여권신장, 여성 사회참여
3. 다양한 아동관, 양육관, 인생관
4.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 관찰/교육 부재
5. 전통육아, 육아본능 보다 인터넷, TV, 책을 통한 지식육아, 성취위주, 경쟁-공격적
6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큰 변화 : 황금만능, 개인주의
7 각종 아동전문가들의 양육에 대한 혼돈되는, 매우 다른, 때로는 정반대의 의견


근대화, "서구화"
후속근대화, IT,BT
지구촌화
한국의 급속한 변화와 정신건강
사회문화적변화
↑↓
가족체계변화
가치관의 변화
성역할, 성관계 변화
여권신장, 남녀평등
직업여성의 증가
이혼↑, 가족붕괴
자녀수의 격감
아동양육과 부모역할의 혼동/ 위기
정서적 지지망의 약화
경쟁, 성취위주, 교육열 → 스트레스 증가
↑ 정신건강문제 위험성


인생목표와 문화적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전통'(동양)
'현대'(서양)
관계중심
감정의 통제
인격의 통합
인간성
공동체중심, 상호의존
화합
위계, 경노
남성중심
유가, 도가, 불교,
성취위주—경쟁
자기주장
자아실현
물질주의
개인주의, 독립성
자유
평등, 인권
여권운동, 양성평등
기독교, 천주교
공존, 혼재 → 가치관의 혼돈, 문명의 충돌

양육의 기능과 목표

-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기초작업
- 생물진화론적으로 인간에 주어진 애착, 공격성, 성, 호기심 등 사회적 본능을 어떻게 충족, 조절, 포기하는가를 가르친다
  - 애정 : 사랑 받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상호의존성,
  - 공격성 : 자기통제력, 자기주장, 추진력, 자기방어
  - 성 : 쾌락의 추구 와 포기, 성 역할/성 정체성
  - 호기심: 놀이, 탐색, 지능발달, 풍부한 생활 경험
- 기초적 사회화
- 생의 의미와 목적, 이상적 인간상 설정
- 사회문화적 가치관 형성

아동의 발달과제와 부모의 역할

연령	발달과제		부모역할
0-2세	신체와 뇌의 발달		養育(體)
1-3세	情感(희,노,애,락,공감력)	仁,情	養育(情)
2-4세	行動(통제력,실천력,자율성)	義,意	訓育
4-6세	德目(가치관,사회규범,예절)	禮,德	德育
7-12세	知識(이해력,추리력,문제해결)	智,術	知育

정신적으로 건강한, 유능한, 행복한 지구촌시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생의 의미와 목적
- 인간의 특성과 이상적 인간관
- 사회-문화적 가치관
- 정치/사회/ 경제적 구조와 여건
- 아동관, 부모-자녀관

아동양육의 목표와 방법

인간의 기본욕구 needs

(Maslow 1943)



UN 아동인권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 **생존권** The Right to Survival
- **발달권** The Right to Development
- **보호권** The Right to Protection

아동들이 원하는 것: 아동권리 옹호 (안동현)

1. 우리들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인구)
2. 안전하게 놀고 자라고 싶어요(생존)
3. 건강하게 자라고 싶어요(건강 및 보건)
4. 잘 돌봐 주세요(보육)
5. 잘 가르쳐 주세요(교육)
6.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원해요(가족)
7. 내 말 좀 들어주세요(사회성발달/시민적 권리)
8. 부모와 함께 사회도 양육을 함께 책임지세요(사회보장)
9. 너무 가난한 것은 싫어요(경제적 안정)
10.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싶어요(사회적 환경)

애착이론의 "발견"과 양육과 발달에의 적용



모-아 관계
Nature of Mother-Child Tie

- 모-아관계를 이차적으로 보는 이론
  - **정신분석 이론 :** 대상관계 Object Relation
  - **사회학습 이론 :** 의존 Dependence
- 모-아관계를 일차적으로 보는 이론
  - **동물행동학적 이론 :** 애착 Attachment

John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 tie to his mother(1958)

Attachment (1969)
Separation (1973)
Loss (1980)

인간애착이론의 창시자



엄마와 애기 사이에 일어나는 일

- 밀접한 신체접촉
- 생리조절(음식, 수면 등)
- 눈 접촉, 안면 살핌, 미소
- 정감의 공유
- 사교춤 같은 상호교환
- 합동주시
- 정서적 튜닝
- 정서적 공명
- 예민하고 재미있는 자극

↔ **애 착** ↓

감각-운동,
사회성-정서,
인지,
언어발달

애착 Attacnment

- 한인간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생물진화론적으로 영유아에게 주어진 행동체계
- 정의: 모-아간의 신체적, 정서적 유대
- 애착행동: 모와의 접촉, 근접을 초래하는 행동
- 애착의 기능:

  모 존재 : 안심,↑놀이,↑탐색, 안전한 기지
  모 부재 : 불안, 놀이↓, 활동↓, 불편, 당황
  모의 불확실성·불안정 : 분리불안, 떨어지지 못함
  모든 생물학적-정신적-사회적 발달영역의 기반, 촉진
- 애착의 종류: 안정된 애착 ----- 정상발달
  저항적 애착 ----- 정서문제 가능성 높음
  회피적 애착 ----- 사회성 부족, 자폐성향
  비조직화/혼란형 애착 -- 행동문제, 학대가능성 높음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인자

- 적극적, 호혜적 상호작용
-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놀이
- 아동의 신호와 cue에 예민한 반응
- 울음과 불편에 빠른 반응
- 정감의 교환과 공유
- 신체적 접촉과 공유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보살핌
- 모의 정신상태 · 정신질환 여부
- 모의 책무성 commitment과 헌신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유아인자

- **유전적 요인**
  접촉을 좋아하는 아기 vs 싫어하는 아기
- **생물학적 · 뇌신경학적 상태**
  정상 사회성 뇌 vs 뇌기능상문제, 사회성발달장애
- **유아의 기질**
  순한 아기 vs 다루기 힘든 아기
  귀여운 아기 vs 까탈스러운/밉상스러운 아기
- **신체적 질병, 장애, 건강상태**

애착이론의 등장으로 본 전통 양육의 재 발견



한국 전통육아의 특성

- 태교 : 생명의 시작부터 소중, 교육의 대상
- 지속적이고 풍부한 신체접촉 : 모유수유,
  같이 자기, 등에 업기(포대기)
- 느슨한 대소변 가리기, 허용적 훈육
- 영유아기 '과잉보호적, 익애적' → 아동기 '엄격, 교훈적'
  부모의 역할 분담; 嚴父 慈母
- 대가족 여러 성인과의 다양한 접촉
- 여러 형제자매와의 관계, 경쟁 경험
- 대인관계에서 애착(情), 친밀, 화목, 의리 등 덕목 중요시
- 모의 헌신과 희생

"어머니의 존재방법, 생의 의미는 아동양육과 교육,
궁극적으로 자식의 사회적 성공에 두었다" *(김재은 1989)*

한국 전통육아의 특성

포대기 양육





자궁-품의 연장 (cf Kangaroo baby pouch)
신체접촉, 감싸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
모 자유롭게 활동, 엄마의 활동관찰,
합동 주시, 어깨너머로 세상을 배움
New York '자연주의 육아패션 용품점'
업기/안기, baby wearing, baby carrier

단동10훈 (檀童治基 十戒訓)

1. **불아불아**(弗亞弗亞) '부라부라' ' 흔들흔들'
2. **시상시상**(侍想侍想) '달궁달궁' ' 달강달강'
3. **도리도리**(道理道理) '도리도리'
4. **지암지암**(持闇持闇) '잼잼 잼잼'
5. **곤지곤지**(坤地坤地) '곤지곤지'
6. **섬마섬마**(西摩西摩) '섬마 섬마' ' 따로따로' ' 용타'
7. **업비업비**(業非業非) '에비 에비'
8. **아함아함**(亞含亞含) '아함 아함'
9. **작작궁 작작궁** (作作弓 作作弓) '짝짜꿍 짝짜꿍'
10. **질라아비 활활의**(疾羅腓 活活議) '훨훨' ' 훠이 훠이'

김주현,박찬욱 (2011) 단동치기 십계훈의 교육관과 유아교육적 의미 유아교육연구 31(2)

이상적 인간형의 동서 비교

동양	서양
• 집단주의 collectivism • 사회적 책임완수, 사회적 관계 완성 •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적 인간관 • 화목, 조화, 질서의 추구 •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개인주의 Individualism • 자아중심, 자아실현, 자기완성, • 평등하고 독립적 개별적 인간관 • 개인의 자유, 권리, 법치주의 • 사회는 개별적 존재의 복수 집단

동양의 전통사상

- 儒, 佛, 道家의 공통점-

- **인간은 대자연의 일환**; 天＝地＝人, 人性＝人道 ＝天道
- **인성의 완성**은 **修身, 無爲, 見性을** 통해 이룸
- **인간 중심**: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며, 어떻게 자신 안의 궁극적인 존재에 도달하는가
- 和 Harmony: 화합과 조화가 대인관계 에서 가장 중요
- **사회적 책임**; 개인의 성취 이차적, 가정, 사회 더중요
- **상호의존, 상호연계** : 모든 사물은 서로 영향, 연계

사람다움, 사람답게 산다는 것 *(최봉영 2012)*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우리'주의, 어울림 주의)
- 바람직한 습성, 좋은 성격을 가짐 (인성교육, '사람됨됨이')
- 성나고, 성내고, 성질부리는 일을 잘 다스림(자기통제)

- 내 몸 안에 슬기와 재주를 길러서
  속으로 참하고 (眞: 속이 차 있음),
  겉으로 멋지고 (美),
  밖으로 어진 (善: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사람이 됨
- 사람이라는 존재의 전체성에 바탕 (생명, 생각, 감정, 행동)

- <사람답지 않음>
  '출세' 만능주의: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돈, 자리/지위, 명성, 학벌, 대국, 이성에 굶주리고 집착

한국인의 덕(德)

(최봉영 2013)

- 德性, 德行, 德談, 德澤, 厚德, 薄德, '덕분에 잘 지냅니다'
  '덕을 보다', '덕을 입다', '덕을 주다', '덕이 되다'
- 덕=한자에서 빌려온 뜻(悳) + 한국인이 덧붙인 뜻(德)
  悳='直+心, '곧은 마음에 바탕을 둠'
  德='彳+直+心' '곧은 마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행동'
- '德은 善美하고 正大하고 光明하고 **순의(純懿)**한 것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동'
- 德은 '**큰 德**': 德은 사람이 크게 되는 바탕 <訓蒙字會>
- 德은 '**어질 德**': 德은 사람이 가진 어진 바탕 <新增類合>
- 德은 '**혜야(惠也)**': 德은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품<全韻玉편>
-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
Child Abuse as Child Rearing Casualty

1. 가해자는 부모가 대부분 이고 가정에서 일어난다.
2. 가정 폭력(아내구타, 아동구타,근친강간)은 모두 역기능 가정(dysfunctional family)에서 일어난다.
3. 중복학대가 대부분이고 학대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는 심각한 부모-자녀간 관계문제를 시사한다.
4. 생후 3~5년간 인간의 사회성 본능인 애정, 공격성, 성/쾌락의 적절한 충족과 조절, 포기를 배워야 하는데 이는 부모의 적합하고 유능한 양육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애착/애정공급 → 유기, 방임, 발육부진, 모성결핍, 반응성 애착장애
훈육/체벌 →, 신체학대, 공격성 자아통제력 미발달, 폭력 학습,
성발달의 문제→세대간 경계붕괴, 성 학대, 성정체성/가치관 손상
호기심/놀이/탐색 → 지적 발달 저하, 문화 결핍,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2

5.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이 학대/방임의 희생자로서 올바른 양육을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역할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 자식을 적절히 보살필 정서적 여유나 방법을 모름

   → 학대/방임 대물림

6. 가정, 교육기관, 사회기관, 국가, 어디에서도 아동양육과 아동발달, 인간관계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없다.



아동학대-방임은 부모역할문제(Parenting),
양육사고(child rearing casualty)라 볼 수 있다.

'양육사고로서의 학대' 개념의

개입과 예방에의 함의

바람직한 육아방법과 태도

- 생물진화론적 모성본능, 육아본능 따르자.
  양육을 즐기고 '심리적 자아 탄생'에서 보람을 찾자
  지식 양육, 성취위주, 부모 욕심 양육은 위험하다
  (애착육아 attachment parenting, William & Martha Sears)
- **품**속에,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 3년 이상 전력양육하자
  양육은 전업, 안되면 양질의 '대리양육' 확보하자
- 동양 '우리', 상호관계 vs 서양 '나', 독립, 자율성 중요시하는 동서 가치의 균형과 통합, 육아에 반영하자
- 아동중심, 발달과제 성취, 인성과 덕성발달에 초점
- 육아는 온 가족이 함께 하자
  (핵가족➔새로운 형태의 대가족, 지지 체계 모색)

국제애착육아협회 기본적 육아원칙

(API: Attachment Parenting International)

1.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항상 준비하고 배워라
2. 되도록 모유수유하고 수유할 때 최대한 사랑하고 존중하라
3. 아이의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4. 아이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신체접촉을 하라
5.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
6. 아이에게는 지속적인 사랑을 주며 양육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7. 긍정적인(존중,공감,사랑이 담긴) 훈육을 해야 한다
8.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보육'의 시시비비, 허상과 실상

- '보육': 어디까지? '대리양육' vs 양육보조
  母는 낳기만 하고 母이기를 포기?→ 양육은 힘들어
  →기르는 데서 오는 즐거움, 보람, 기쁨 실종
  →긍정적 모-아관계 형성 힘들고→ 부정적 상호교환
- '육아를 비생산적인 일로 여기는 사회'(조선 15.3.7)
  '자기새끼도 귀찮아서 어린이 집 떨궜으면서 잘 보살피길 바라냐?'
  '자기 애, 어린이 집에 팽개쳐놓고 쇼핑하고 커피숍에서 수다'...'
  전업주부를 놀고먹는 사람으로 취급→ 부정적 모성 이미지
- '미여성, 고액연봉 버리고 가정에 돌아온 이유'(조선 15.3.15)
  - Housewife 2.0 저자 Emily Matcha: 미국 '컴백홈' 여성 200명 면접
  - 육아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 고만두는 것이 아니고, 육아, 요리, 뜨개질 등 집안일이 좋아 기꺼이 사표 → '새로운 가정의 시대'
- '워킹맘 괴롭히던 여성 CEO, 워킹맘되자 반성' (조선)
  → 출산의 고통 공감, 워킹맘 헤드헌팅사 창업

학대예방사업

- **3차 학대예방:** 학대발생시 즉각 가족개입/치료/처벌
- **2차 학대예방:** 학대고위험군 관리/예방 조처
- **1차 학대예방:** 올바른 양육을 통한 학대예방
  -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 변화
  - 전통자녀교육과 서구적 자녀교육의 통합
  - 양육의 목표와 가치관의 재설정
  - 양육, 훈육, 덕육, 교육 방법 교육/실습

'올바른 양육' 증진 전략

- **범국민적 인식 개선:**
  올바른 양육은 정상 발달의 기초가 되고, 정신건강증진, 정서행동문제, 폭력, 학대 예방 기능이 있음을 알린다

- **'내 아이 내가 기른다' 캠페인:**
  - 양육전담 엄마: '내가 내 아이를 기르는 일은 무엇 보다 중요하고 최고다'라는 자부심→ 육아의 가치와 보람. 아이 키우기 위해 일 그만둔 엄마, 고귀한 선택상 받아야
  - 직장모, 커리어여성: 최대한의 효과적 접촉으로 애착형성 적절한 '대리양육', '보육책' 마련
    육아휴직 1~3년; 불이익 없고 복직 보장
    대리양육인 확보, 직장 내/근처 어린이 집
    재택 근무,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장려
    아빠가 양육 전담: 유능하고 원한다면 why not!

'올바른 양육' 증진 전략-2

- **부모되기위한 양육 교육/훈련**
  - 초,중,고등 학교 교과목에 '아동발달과 양육' 도입
  - 출산 전, 후 예비부모 교육 필수 내용
  - 영유아기 육아 상담/교육
- **기존 양육관련 전문가 교육/훈련**
  아동학, 아동복지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특수교육
  소아과, 간호학, 소아정신의학, 보건학, 사회복지사
- **'양육 전문가' 양성:**
  전문가, 교사, 일반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전문가
- **보육교사, 기타 대리양육자 자격강화/처우개선**

지구촌화 시대 올바른 양육을 위한
동서사상의 통합

- 서양문명은 지난 400 여년 간 전 지구를 석권
  → 동양은 지난 100년에 걸쳐 서양을 배우고, 흉내 내고, 모시는데 급급 (事大主義) : 인도, 일본, 월남, 한국, 중국
  → '근대화' = 서구화 → 동양 전통사상과 가치관의 몰락

-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차이점은 실제보다 과장
  둘 사이에는 다른 점보다 공통점과 유사점이 더 많아
  - **유가,도가의 인간의 본성**(性), 天道 = 人道
    불가의 우리자신 안의 부처(見性成佛)
    기독신앙의 인간은 '신의 모상으로 창조'(image of God)
  - **유가의** 仁 = **불가의** 慈悲 = **기독교의 사랑**

- **동양문화적 가치관의 회복**은 개인주의적 서구문명의 위험성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균형적 인간관**을 창출 : '求同存異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가치와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 비교

	한국	미국
문화적 가치	자연과 합일, 조화 마음지향(heart-oriented) 심정주의 명상적, 순환적 사고 존재(인간지향) 자기부정, 자기억제	자연에 대한 지배, 정복 정신지향(mind-oriented) 합리주의 분석적, 직선적 사고 행동(과업지향) 자아주장, 자아충족
자녀양육 방식	밀접한 신체 접촉지향 대인지향 관계지향 비언어적 의사소통지향	원거리 상호작용 사물지향 과업지향 언어적 의사소통지향
사회화 방법	연령에 따른 성숙 기대 비일관적, 비연속적 훈련 감동, 충격요법 유보되는 보상과 처벌	조기훈련과 습득 일관적, 연속적 훈련 점진적 이행 즉각적 보상과 처벌

지구촌 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자녀양육과 교육-1

- 동서심리학의 대립 → 동서심리학의 통합
  -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동서문화의 강점과 약점 연구
  - 지구촌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불어, 유능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능력개발
  - 적응력, 융통성, 사회성, 인간애, 독립성, 자율성
  - 공존을 위한 나눔과 배려, 우리 "we"ness > 나 "me"ness

- "서구 심리학의 독립성과 동양심리학의 상호의존성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 모든 개개인은 이 둘의 혼합체이다"

<Nisbett, 2003>

지구촌 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자녀양육과 교육 - 2

서양인들은 동양문화의 진수를 배우고,
동양인은 서양문물에 대한 우상화와 맹목적 추종을 반성하고
전통문화적 관습과 가치관을 회복하려는
진솔하고 심각한 노력이 요구됨

↓

동서문화적 가치관의 통합
분열대신 모음
충돌 대신 화합
각자 갈길 가기 대신 공존

↓

통합된 가치관을 자녀양육과 교육에 반영

인간의 정신사회적 발달과제
(Erikson-Hong)



결어: 양육사고로서의 아동학대

- 올바른 양육은 아동의 생존, 발달,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개발하고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자아의 탄생을 돕는다.
- 올바른 양육은 아동의 정상발달과 각종 발달문제예방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부모의 역할/책무다
- 아동의 가장 기본적 권리는 올바른 양육(Good enough parenting)을 받는 것이다
- 올바른 양육은 학대의 일차적/기초적 예방책이다

  따라서 국가정책 수립과 전문가 양성, 각종 부모교육과 훈련, 중고등학교교육과정에 필수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학대의 판단과 딜레마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안

윤 진 영 경감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경감
윤 진 영

Ⅰ.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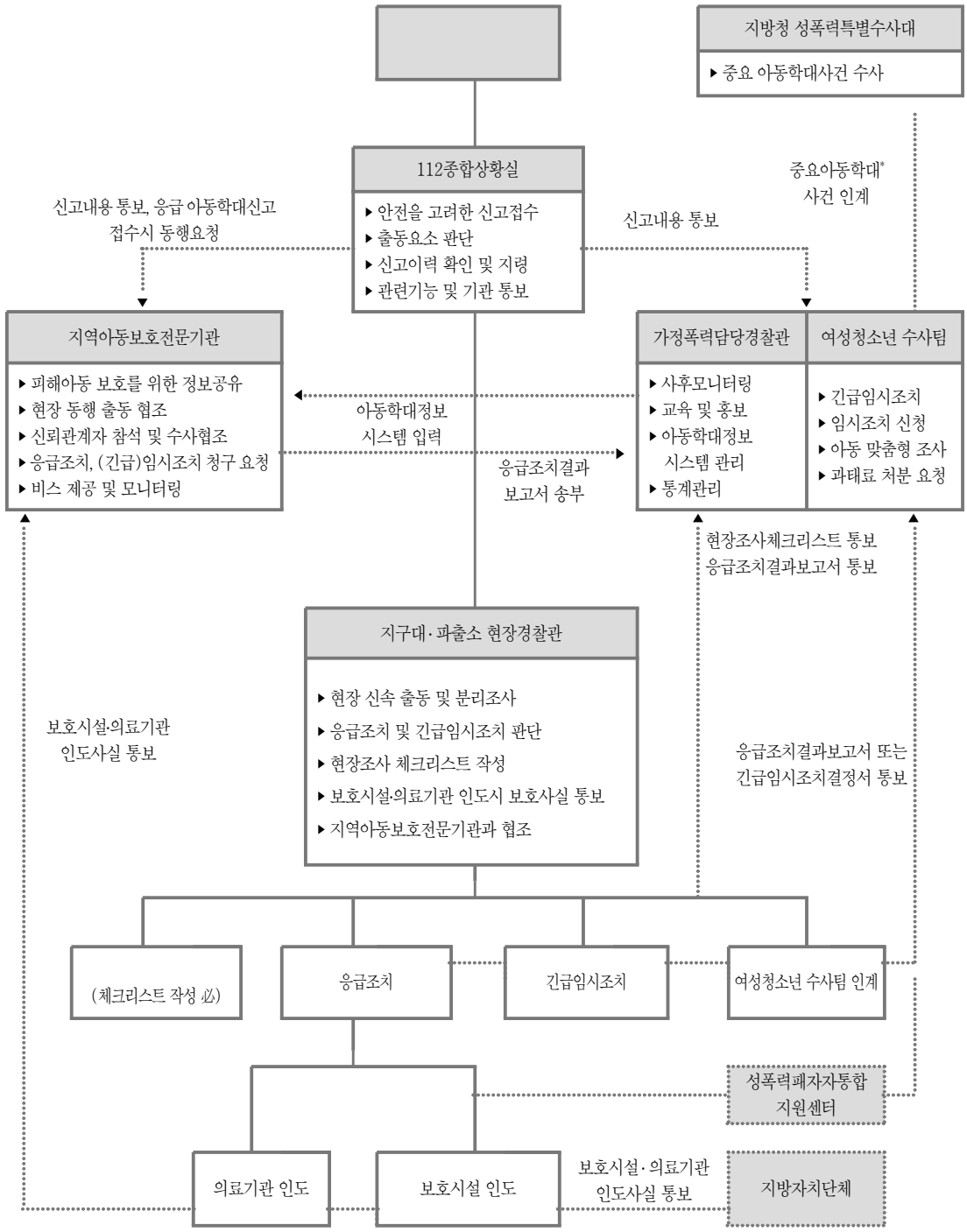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은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함은 물론 학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형사처벌, 아동보호사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정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특례법(성폭력, 가정폭력) 보다 진일보인 법으로 평가된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18세 미만 아동이고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점에서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수사단계에서 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전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출동 건수, 신고건수, 검거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동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인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현장조치과정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현재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응방향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Ⅱ.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 중요아동학대사건 :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지방청 고발사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위 도표에서 보듯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현장조사 단계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장경찰관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출동을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의를 할 수 있고 경찰서 가정폭력 담당경찰관의 전화 코칭(Coaching))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경찰서 중간관리자에 의한 콜백(Call Back)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은 계속 변하고 현장에서 받은 인상을 타인이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장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현장 출입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신고된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학대의심자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대의심자는 자신의 학대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경찰관이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경찰관의 출입을 일단 거부하게 된다.

현장경찰관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현장을 반드시 확인[1]해야 하므로 학대의심자에게 아동학대 현장 조사거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경고한다. 수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학대의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로 부수고 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일응 적극적인 현장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의심자는 조사거부로 얻은 시간을 이용해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빼돌릴 수도 있다.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 학대의심자의 범죄은닉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지는 피신고자에 대한 위하감이 약해

---

1)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p25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찰관은 현장경찰관이 신고취소 등의 이유로 현장확인 없이 종결하는 사례없도록 현장 도착 여부, 피해상황 등 보고토록 지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대의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이행시 현행범 체포요건도 되지 않는 등 실효성도 없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11조제4항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작위 또는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기피·거부(피해아동을 빼돌림, 출입문 잠금 등)는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학대의심자가 현장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노인복지법」[3]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물며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없고 학대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가져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여성 등 성인과 달리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미약하고 학대행위자와의 유대관계로 학대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일련의 공권력의 조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행정형벌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도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시[4]하고 있다.

2. 학대와 훈육의 판단과 개선방안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국[5]을 설치하여 가정내 사건을 전담하여 조

---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헌재 91헌바14 결정 :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 내용을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아동보호국은 18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조사권, 행정명령권, 임시조치 청구권을 보유한 행정조직으로 뉴욕시는 ACS(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애

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역할도 경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과 업무처리 절차 교육, 경찰교육기관을 활용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범죄와 마주치는 현장경찰관을 아동학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경찰관은 어떤 기준으로 현장에서 학대를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아동학대 현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년 3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개발한 「축약형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적절한 현장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누구나 학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건인 경우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현장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 현장경찰관은 피해아동에게 생긴 학대의 흔적이 학대의심자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① 훈육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적합성, ③ 훈육 정도의 적정성 등을 살펴 훈육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즉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된다.

주관적인 판단은 개개 현장경찰관의 마음속에 있는 훈육의 허용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편견(예 : 계모는 학대할 확률이 높다, 부모가 직업이 없으면 학대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나이에 대한 편견(예 : 아동이 고등학생인데 무슨 학대가 성립되겠냐) 등이 자연스럽게 개입되어 학대와 훈육의 경계 판단을 어지럽히게 된다.

물론 관련 판례가 있으면 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판례 대부분이 학대로 인한 사망, 성학대, 중상해 사건 등에 대한 편중되어 있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고 하물며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여 현장경찰관의 업무지침(Guide Line)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경미범죄에 대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구분할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제안한다. 지침은 아동의 연령, 손상의 정도, 도구의 사용여부, 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도 제안한다. 또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관적인 판단 여지를 배제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틀란타시는 DFCS(Department of Family & Children Services) 등 명칭은 相異

3.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경찰관이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에게 즉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아동학대 특례법 제12조(응급조치)[6]와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 있다.

응급조치 중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1호와 2호가 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학대행위자가 무시해버리면 학대행위자가 현장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응급조치 3호(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여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학대행위자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 현장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여 학대행위자를 격리시키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학대행위자가 악의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더라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가정구성원인 경우에 한하여(시설 내 아동학대는 관련규정 없음) 과태료가 부과됨을 경고할 수 있을 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인신상의 제약을 할 수 없다. 결국 임시조치가 결정될 때 까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같은 공간에 남아 있게 되어'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처럼 학대행위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를 자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즉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피해아동의 안전을 국가가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9월 학대행위자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로 인도의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례법 제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학대행위자가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편에 서서 친권을 주장하며 현장경찰관에게 저항할 여지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응급조치 3호(보호시설 인도) 결정시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국가 공권력이 즉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대행위자가 현장경찰관의 보호조치에 폭행·협박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다려 제재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아동의 안전은 보호 받을 수 없고 수동적인 공권력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III.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경험률은 25.3% 2011년 기준 아동 인구(만0세~17세) 9,688,376명(통계청, 추계 아동인구)을 기준으로 매년 245만 건 이상 신고되어야 하나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학대 근절은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신고가 없다면 피해아동을 보호할 방법도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국가의 개입도 없다. 일반시민의 신고와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감소추세이다.

《최근 3년간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구 분	’12년	’13년	**’14년**
전체건수 (중복신고·상담 제외)	8,979	10,857	**15,023**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3,316 (36.9%)	3,706 (34.1%)	**4,014 (26.7%)**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분노출 부담과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각 15.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하여 신고의무자의 신분 비밀 보장이 신고율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반

증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특례법 제62조는 비밀엄수 등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조항으로 신고자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방지, 조사과정에서의 신분비밀 보장, 책임의 감면 등 종합적인 보호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근 이슈화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보육교사를 그들만의 블랙리스트로 공유하고 채용 기회를 박탈(어린이집 원장'블랙리스트'공유, KBS, 1.26 방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단순히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뿐만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과 신고에 따른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거나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시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신청 등 보호를 받도록 해야한다.

III. 맺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안전'이다. 언제부터 인가 골든타임이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고 설령 예방하지 못했다면 초기 대응이 아동학대범죄에 비춰본다면 현장경찰관의 초동대응 결과에 따라 아동의 일생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사성어에 견미지저(見微知著) 하는 말이 있다. 큰일이 나기 전에는 대게 이런저런 작은 조짐들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작은 학대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었다. 그 결과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다.

사기(史記)에 치병막여적시(治病莫如適時)라 하여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고 「아동학대 특례법」을 중심으로 우리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이 때를 놓치면 안된다.



아동학대행위의 법률적 재조명

황 은 영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아동학대행위의 법률적 재조명

황은영 검사(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Ⅰ. 아동학대 대응 법체계의 전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의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루었다.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이슈화 되고, 아동학대 정책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는 2013. 12. 31. 아동학대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2014. 1. 28. 공포하여 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9. 29.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학대특례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규정(제2조 제4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 한정하여 신분범죄화한 것인데, 이는 보호자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4개 조항 두고 있는데, 아동학대치사죄(제4조)[8],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9], 상습범(제6조)[10],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7조) 규정이다. 일반 형사범보다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중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한 특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아동관련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용이하고 아동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제10조)를 부여하여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

---

7) '아동학대특례법'으로 약칭함

8)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살인죄(제250조)와 비교하면 사형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9)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나 존속중상해죄(제258조 제2항: 2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하였다.

10) 상습폭력의 경우에는 실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가장 높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17조 위반)의 상습법은 따로 가중규정(제72조)을 두고 있다.

과(제63조 제1항 제2호)하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 출동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규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학대현장에 출동할 때 서로 동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장출동 규정(제11조)이다.[11] 이는 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한편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집중되는 부분은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를 위한 측면에서의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에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아동학대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견해[12]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결국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 제7호)[13], 금지행위(제17조)[14]와

---

11) 물론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 제27조에 규정된 내용을 가져온 것이나, 아동학대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12)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2014), 169면 이하.

13)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처벌규정(제71조 제1항)[15]에서 아동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로 규율하는데 어렵다는 점이 가장 부각된다. 특히 보호자의 학대를 문제 삼는데 있어서, 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동학대특례법이 '아동학대범죄'[16] 개념을 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상

---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5)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

의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물론,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아동학대의 형사처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발제는 이러한 아동학대처벌의 어려움을 전제로, 아동복지법위반죄의 10년간 검찰처분현황과 아동학대행위의 법적 개념을 살펴본 다음, 아동학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저해하는 '아동복지', '친권', '훈육' 등의 개념을 검토하고, 아동학대의 범죄화의 효용과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다.

Ⅱ. 검찰처분 현황(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의 범죄로서의 통계는 적어도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고 본다.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죄 등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나 상해죄로 다루어졌고, 치상 내지 치사죄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아동학대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상해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에 의해 가정폭력의 한 태양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는 죄명상으로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분류되는 사건통계라고 할 수 있다.[18]

(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17) '가정폭력특례법'으로 약칭함

18) 2014. 9. 29. 이전까지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분류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태양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통계화를 하고 있다.

먼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검찰 접수와 처분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2년부터 사건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도에는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 **아동학대사건 검찰 접수 및 처리 인원 현황**

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보호사건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공소보류				
				구속	불구속														
2005	**160**	146	**36**	6	13	17	**96**	40	24	0	19	9	1	3	0	1	7	6	0
2006	**178**	177	**49**	9	17	23	**116**	55	33	1	5	9	0	13	0	0	7	5	0
2007	**144**	139	**39**	7	12	20	**87**	35	31	1	5	7	0	8	0	0	9	4	0
2008	**176**	162	**56**	0	35	21	**85**	32	27	1	2	13	1	9	0	2	10	9	0
2009	**163**	156	**39**	4	11	24	**89**	45	24	2	5	5	0	8	0	2	14	12	0
2010	**97**	91	**28**	0	13	15	**53**	26	14	1	3	4	0	5	0	2	8	0	0
2011	**191**	177	**49**	3	18	28	**113**	55	23	2	5	8	1	19	0	1	9	5	0
2012	**263**	250	**68**	2	33	33	**153**	87	30	1	4	11	0	20	0	2	16	11	0
2013	**471**	419	**144**	11	70	63	**232**	123	48	1	6	38	0	16	0	6	18	19	0
2014	**957**	860	**244**	29	109	105	**491**	228	136	4	4	80	2	37	0	3	68	54	0

전체적으로 기소보다는 불기소 비율이 높다. 기소 중에서 구속사건은 매우 적고, 불구속사건은 구공판과 구약식이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불기소처분을 보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장 많고, 기소유예 처분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2014년도에 급증하였고, 그 외 처분은 미미하다.

2014년도부터는 아동복지법위반 죄명이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특례법위반 죄명도 세분화되었다. 2014년도의 세분화된 통계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

19)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2014. 9. 29.부터 세분화되었다.

[표2] 2014년도 유형별 아동학대사건 검찰 접수 및 처리 인원 현황

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보호사건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공소보류					
				구속	불구속															
성희롱등	**2**	2	**1**	0	0	1	**1**	0	0	0	0	1	0	0	0	0	0	0	0
아동복지법위반	**893**	812	**230**	26	104	100	**459**	217	124	4	3	75	2	34	0	3	67	53	0
상습아동방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상습아동학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방임	**11**	8	**0**	0	0	0	**8**	5	2	0	0	1	0	0	0	0	0	0	0
아동유기	**2**	2	**1**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0
아동유기방임	**2**	2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0
아동학대	**25**	20	**7**	0	4	3	**13**	5	6	0	0	2	0	0	0	0	0	0	0
이용행위	**2**	2	**0**	0	0	0	**2**	0	0	0	0	0	0	2	0	0	0	0	0
아동학대특례	**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보호처분등의불이행	**1**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상습상해	**2**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상습폭행	**7**	5	**1**	1	0	0	**3**	1	1	0	0	1	0	0	0	0	0	1	0
상습학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2**	2	**0**	0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협박업무수행등방해	**1**	1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957	860	**244**	29	109	105	**491**	228	136	4	4	80	2	37	0	3	68	54	0

Ⅲ. 범죄로서의 아동학대행위

1. 아동학대행위의 법적 개념

가. 형법상의 학대

형법 제2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죄와 관련하여 '학대'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20] 판례도 기본적으로 같은 해석이나, 다만 형법상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21]

유기죄는 형법 제2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기'란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요부조자를 보다 위험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요부조자를 두고 떠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22]

따라서, 학대는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유형적 학대 이외에 폭언(언어적 학대)·구박·어두운 곳에의 감금 등 무형적 학대도 포함된다.[23] 다만 무형적 학대는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

20) 박재윤(집필대표), 이성보(저자), 「주석형법, 형법각칙(4)」(2006), 91면.
2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22) 박재윤, 이성보, 앞의 책, 80면.
23) 박재윤, 이성보, 앞의 책, 91면.

실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상의 학대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아동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②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에서 논의되는 학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아동학대행위 태양 중에서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학대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71조 제1항에 벌칙규정을 두어 형벌로써 제재를 가하여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으로도 학대와 유기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신분자들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학대죄는 '(타인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 범하는 범죄이고, 유기죄도 '요부조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범하는 범죄이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한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호·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 있는 사람의 지위 남용과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의 학대·유기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학대유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정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 규정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6호 후단은 방임행위에 관한 것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 개념과 범

위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으로서는 명확성이 결여되었다는 견해[24], 방임행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유기행위와는 별도로 처벌유형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5], 특히 방임과 관련하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방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강의 보호만을 하는 경우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으로서 모호성은 더욱 가중된다는 견해[26]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형법상의 학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형적 학대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개념이 매우 넓다. 단순히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정도'라는 해석에 의해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이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발달과정에 있는 매우 취약한 보호대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형법상의 학대 개념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학대행위까지도 처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고, 법집행에서도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역시 방임행위도 그 개념상 형법상의 유기죄의 해석만으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다양한 학대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전단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부분은 형법상의 유기죄에 상응한 전형적인 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후단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로써 제재하고 강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범죄에 친하기 어려운 아동복지 개념

24)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2014), 216면
25) 이천현,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제27호(2014), 186-187면
26) 김슬기, 앞의 논문, 216-217면

범죄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 중에서도 국가가 형벌권으로써 강제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목적을[27],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28] 규정하고,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의[29] 정의 규정을 두었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기와 방임은 보호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 다음 제17조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30] 금지행위는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마찬가지다.

아동복지법이 추구하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는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임에도 그 침해행위를 범죄화하다 보니 당연히 범죄구성요건에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벌칙 규정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형사벌 규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는 없고, 사례와 해석을 통하여 그 한계를 구체화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행위 처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기본이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피해아동이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신체와 정신이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숙자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친권과 훈육

---

27)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9)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0) 각주 8)과 9) 참조

실제 아동학대행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친권자의 훈육 문제이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의 효력의 하나로 '징계권'이라는 제목으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육 내지 징계는 실제 아동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행위인데 일응 아동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훈육과 학대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아동을 지도 교양하기 위해서 하는 훈육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와는 그 개념 요건부터가 다르고 목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문제를 논의할 때 친권자의 훈육행위가 거론되는 것은 체벌과 관련된다고 본다. "훈육을 위해 아동을 때리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간단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직접 체벌과 관련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행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손상이 있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훈육이라는 말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외견상으로는 단순 폭행 형태라면 체벌이 허용되는가? 2010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로 교사의 체벌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직접체벌은 금지되지만[31] 간접체벌은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로 이해된다.[32]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과 관련하여 징계권의 한계 내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징계권의 한계 내이면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보고 있다.[33] 헌법재판소도 교사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체벌하는 것을 정당행위로 본다.[34] 교사의 체벌과 관련하여 ①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②체벌의 절차(학생에게 체벌의 목

3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참조
32) 황준성, 학교체벌 관련 국내 법령과 주요국 법령의 비교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25권 2호(2013), 141면 이하
33) 대법원 2004. 6. 10.선고 2001도5380판결
34) 헌법재판소 2006. 7. 27.선고 2005헌마1189결정

적을 알리고 변명과 반성의 기회 부여 등)에 따라, ③적정한 방법(위험한 도구나 신체이용 금지 등)으로 ④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하여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35]가 유력하다.

그렇다면 친권자의 체벌은 허용되는가? 위 민법 규정과 체벌에 관한 판례 등을 종합한다면 친권자의 징계권의 일환으로서 훈육을 위한 체벌도 허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아동을 구타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 부모는 거의 예외 없이 훈육을 위한 체벌 과정에서의 사고라고 변명한다.[36]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는 훈육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례에서 아동에 대한 폭행을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을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체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7] 훈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도와 교양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체에 손상이 생기거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라면 이미 그 한계를 넘은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동은 체벌이 훈육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순수한 훈육을 위한 체벌이 현행법과 판례상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교양의 목적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그 방법도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서적 학대행위도 마찬가지로 '훈육을 위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성적 학대행위와 아동매매 등 아동이용행위 역시 훈육이라는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 태양이다.

---

35)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제25권 1호(2012), 58면 이하

36) 14세 친딸을 목검으로 30여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체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만을 인정하여 징역6년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 12. 5.선고 2014노286 판결).

37)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Ⅳ. 범죄화의 효용과 문제점

실제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아동학대 문제를 논의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은 문제점과 개선을 논의할 때 항상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왔다. 특히 성폭력은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권리장전이라 할 만큼 사법절차상 개선이 이루어졌고, 처벌규정인 실체법도 다양해졌으며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폭력도, 1997. 12. 13. 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이 2011. 7. 25. 개정되면서 폭력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여 '긴급임시조치제도'를 허용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 개정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측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입법 반영을 통해 가정폭력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학교폭력은, 소년사범정책과 관련해 비범죄화 논의가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학교폭력에 의한 청소년 자살문제 등으로 사회이슈화 되면서 폭력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아동학대 역시 피해자측인 아동의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가해자가 훈육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매우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다. 아동학대범죄로 규정된 내용은 대부분 폭력을 그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다. 폭력행위자들은 대부분 폭력 행사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더구나 그 폭력을 사회적인 통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법상으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입건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재범 방지와 보호가정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다루는 입법적인 결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1961. 12. 30. 제정[38]될 당시부터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써 강제하였다.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거나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행위까지 형벌을 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오히려 낯설기까지 하다. 이제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를 오히려 범죄로 보지 않고 친권자의 훈육 문제로 보고 복지적인 개입만을 강조한 아동복지정책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성인인 어른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입건하도록 한 가정폭력특례법의 취지와,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의 방지를 국가형벌권으로 담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아동학대행위를 범죄화할 때, 형사법체계의 경직성과 보호자를 범죄자화하여 과잉 형벌권이 작동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호처분으로 교정과 교육을 통해 보호자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형사법절차의 엄격성과 경직성을 고려하여 사적인 법적청구권인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아동복지와 형사정책의 조화를 위한 입법적인 고려라고 본다. 아동학대행위의 범죄성을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알려 예방하는 '일반예방적' 형사정책과, 가정의 유지와 개선・피해아동보호・재범방지를 위한 '특별예방적' 형사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이 요구된다.

38) 당시에는 법률명이 '아동복리법'이었다. 특히 6.25.전쟁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Ⅴ. 아동학대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1. 기준의 일관성 유지

형사처분은 다른 어떤 국가작용보다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요한다. 가장 강력한 침해를 수반하는 국가형벌권이 구체적 타당성에 집중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형벌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벌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아동이 청소년기에 도달하여 뚜렷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권 등 아동의 권리와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할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작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는 때를 맞추어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였다.[39]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보호사건송치(보호처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전 조사 근거 규정(제25조)을 두고 있다. 또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를 인정하여 경미한 아동학대사건과 기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인 복지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2. 범죄의 특수성 고려

아동학대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39)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미 2014.1. 아동학대특례법상의 중상해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수성과 관련된다. 아동학대는 일반 가정폭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 범죄의 은폐성 외에도, 학대에 노출된 극히 취약한 아동의 진술확보의 어려움,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종용에 의한 진술오염 내지 사실왜곡, 수사거부 등이 문제된다.

그러나, 아동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이상 증거법상 의미 의미 있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진술을 신뢰성 있게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 있는 보호자의 조사협조를 구하고, 아동전문가의 자문과 협력,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중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한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도 성폭력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사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40]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는 영상물의 촬영·보전, 심리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증거보전의 특례, 진술조력인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상의 특례가 모두 준용된다.[41]

Ⅵ. 종합적 아동보호의 틀 만들기

아동학대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사 외에도 피해아동과 보호자의 분리라고 본다. 일시적 분리이든, 장기적 분리이든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먼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심리적 혼란과 보호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일반 가정폭력보다 더 국가적 개입이 어렵다. 국가기관이 학대냐 훈육이냐를 고민하고 주저하는 동안 보호자와 아동은 학대상황의 개선이나 교정 없이 더욱 더 밀착되며 아동복지는 구호

40) 아동학대특례법 제16조
41) 아동학대특례법 제17조

에 그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지원하고 맡아줄 기관을 연결하기 어렵다. 위탁가정의 절대 부족, 연령별 아동의 복지에 합당한 아동보호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종합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이 확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훈육인가 학대인가의 구분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의 경중을 구분하여 기소유예-보호처분-형벌로 이어지는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여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을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에는 아동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이를 국가와 사회가 묵과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하여 교정과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통해 본 아동학대

최은주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사례를 통해 본 아동학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법상 아동학대란

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정의하고 있다.

나. 아동보호사건

(1) 임시조치 : 병과 가능, 각 2개월이나 1호에서 3호는 6개월까지, 4호에서 7호는 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사단계의 임시조치(수사절차 진행 중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와 송치 후의 임시조치(검사가 아동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거나 법원이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 경우 송치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임시조치)로 나뉘고, 그 내용은 1호(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호(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호(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2) 보호처분결정 : 병과 가능, 1호에서 3호까지 및 5호에서 8호까지는 1년까지, 4호는 200시간까지이나 연장하면 2년까지 400시간까지 가능.

1호(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호(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1) 의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피해아동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행위자가 아닌 자,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에 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하여 준 국선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원에 청구

(2) 임시보호명령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시까지, 그 종류 및 내용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 : 병과 가능, 1년까지

1호(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2. 사례

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초2 여아)

- 위생상태 불량, 몸무게 미달, 돌보미 교사, 연락도 안되고 늦은 귀가, 돌보미 교사 공백기에는 매장 직원에게 맡기고 술 먹고, 지각, 결석도,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고, 술먹고 주정

- 학원가라고 이마와 머리 때려

나. 아동보호사건(만 5세 남아)

- '밤 10시경, 안 씻겠다고 버티고 늦게까지 TV 본다고 회초리로 등, 다리 등 수회 때려'

- 별거와 이혼을 거치면서 몇 년간 혼자 키워, 5세부터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6세부터 빈도가 잦아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화나면 소리지르고 친구를 밀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이상행동을 한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 더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 만 3~4세부터 말 안들으면 엉덩이를 소리나게 때림, 회초리는 처음

다. 아동보호사건(15세 쌍둥이 남아, 10세 남아)

- 하지 말라고 여러 번 하는데도 딱지치기 멈추지 않다가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림

- 상반된 주장 : 양육을 빌미로 이유 없이 3명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처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뺏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겨울방학기간 내내 학원을 끊어 외출을 못하게 아동들을 감금하고, 겨울철에 얇은 옷을 입게 하고 신발이 작은데도 사주지 않고 꺾어 신도록 하여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학대/ 학원 몇 번 결석하자 학원 끊어, 엄마와 문자 교신한다, 게임 많이 한다고 휴대전화 뺏겨(학교 다닐 때는 돌려주었다), 식사는 거르지 않고 챙겨줘, 용돈 1만원, 3번 경고 후 위반하면 체벌, 혼난 적은 많지만 맞은 적은 없다, 엄마와 사니까 설거지, 집안일 하지 않아 좋다/ 학원 중단하고 쌍둥이는 방과 후 수업, 막내는 학습지로 전환,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 항의 때문에 쌍둥이 머리를 때린 적 있다, 이혼 후 3명을 혼자 키우는데 거짓말까지 하니 통제하기 어려워 체벌, 아빠는 아이들에게 엄해야, 아이들도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3명 학원비 월 100만 원

라. 아동보호사건(15세 여아)

- '눈을 흘긴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 2시 공부 안하고 잤다는 이유로, 저녁 8시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방에 서있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

- 초5부터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욕설, 폭행 당해왔다고
- 훈계 목적으로 체벌했다 주장

마.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03년 여아, 05년 여아, 06년 남아)

- 모두 손들게 하고 둥근 쇠막대로 허벅지 때려, 밤 10시 03년 여아 늦게 왔다고 쇠막대로 엉덩이 폭행(동생들은 무서워 방에 들어가 있어), 이유는 말을 안듣는다,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 밸트, 샤워기로 맞은 적도 있어
- 14. 7.부터 행위자와 살아, 행위자는 빨래를 청소기에 돌리것 외에 모든 집안일(밥 짓기, 설거지, 식사 차리기, 빨래 널기와 개기, 청소 등)을 아동들에게 시켜

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03년 남아)

- 발가벗겨 집 밖에 내쫓고....
- 초2부터 2달에 한 번은 가출, 거듭되는 마트 절도, 노숙도 하고, 촉법소년이 된 2014년부터 계속되는 소년보호사건(친구 집 돌로 현관문 유리깨고 들어가 3,000원 훔쳐, 2살 위 동네선배의 강요로 가게에 침입해서 현금 절취, 3살 아래 동네 후배와 함께 만 7세 아이 위협해서 자전거 갈취)

사. 피해아동보호명령(00년 남아)

- 시험기간인데도 PC방에서 게임했다고 친모가 신고 있던 샌들로 이마 부위를 폭행, 아동이 112 신고

아.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보호사건(99년 여아)

- 행위자는 부친(68년생)과 조모(41년생, 지체장애 2급, 류머티즘으로 외출 불가)
- 조모는 부친이 3년 전 베트남 여자와 재혼하게 되자 '니가 혹이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베트남 여자와 재혼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거의 매일 손과 발로 폭행, 베트남 계모와 아동의 갈등 상황에서도 계모 편을 들고 '새엄마가 또 나가면 어쩌냐, 이 아버지 신세 망친다, 눈치껏 살아라'.... 부친은 같이 죽자면서 베란다로 끌고가고, 택시비 줄테니 한강에 빠져죽으라고

하고, 나무주걱으로 종아리 때리고

- 아동 5세 이혼, 초3때 친모 한 번 본 적 있음, 언니(현재 만18세)는 친모가 양육, 친부는 한국여자와 재혼 후 이혼하고 베트남 여자와 재혼하여 동생(만2세)을 둠, 아동이 모든 집안 일을 하고 있음. 등교 전에 아침 설거지까지 하고 나감, 주말에도 친구들과 놀다가는 저녁 5시가 되면 들어와 밥을 함.

- 초1부터 가족들 지갑에 손을 대고, 몰래 동생의 분유를 먹고 동생 기저귀를 생리대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뺏자 항의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가출...., 조모가 갇힌 생활을 하고 있어 기댈 대상이 아동밖에 없다고 빨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자. 피해아동보호명령(98년 여아)

- 아동의 잦은 외박, 늦은 귀가, 가출, 마음대로 들어왔고 마음대로 나가는 생활

- 아침 8시 귀가했으나 다시 또 나간다고 하자 폭행

차. 아동보호사건(16세 여아)

- 초3때 빗자루로 폭행, 초4때 한문 못 외운다고 파리채로 폭행, 초5때 엠피쓰리 잃어버렸다고 각목으로 폭행하고 수련회 가고 싶으면 노래부르라고 했는데 거부한다고 효자손으로 폭행, 초6때 늦은 시간 우유 사달라고 때쓴다고 의자로 폭행, 낭비한다고 옷 다 벗기고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 샤워기로 뿌려, 중1때 교회 안간다고 접의식 의자로 폭행, 중2때 늦게 귀가했다고 야구방망이로 폭행, 최근 고양이 놀란다며 청소기 코드를 뽑아 청소를 못하게 했다고 청소기 줄로 폭행

- 훈계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은 때린 것 같다고 진술(중1부터 불량교우 사귀고 가출도 하고 공부도 안하고 중2때 선배들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동은 학교도 제대로 안나갔다)

- 생계 때문에 행위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 학교에 다니지만 졸업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주 결석한다, 졸업 후 패션학원 갈 예정이다.

- 13년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인터넷 공동구매사이트 개설하여 사기 비행 600여 회에 걸쳐 피해금액 600여 만 원, 행위자가 변제함, 아동은 소년재판 받음.

카. 아동보호사건(2세 남아)

- 부엌의 김치통을 엎어뜨리고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뺨 1대 때려

- 전처와 사이에 1남 2녀, 재혼하여 2남, 과거 중학생 아들이 한 달간 학교에 안가 때렸고 큰 딸이 신고한 적 있음(가정보호사건으로 수강, 보호관찰 처분 받음)

- 13. 2. 방임 신고, 14. 7. 친모가 길에서 아동 때리고 소리 질러 신고된 바 있음.

타. 아동보호사건(13세 여아, 11세 남아)

- 딸 : 11년 여름 딸이 수학문제 못 푼다고 시계모형 플라스틱으로 수회 머리를 때려, 11년 가을 수학문제 이해 못하고 두 번 묻는다고 수학책 모서리로 머리 내리쳐, 12년 동생과 싸웠다고 쇠 옷걸이로 온 몸을 때려, 14년 바른 자세로 먹지 않고 아빠 다리로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머리 내리쳐, 14년 세탁기에 있는 빨래 꺼내라고 했는데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빨래를 섞어서 널었다고 또 주먹으로 얼굴 때려, 설거지 하면서 행위자를 노려보고 이를 갈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등과 배를 때려, 반성할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설거지하기 위해 나왔는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얼굴과 몸에 뿌림.

- 아들 : 13년 허락없이 늦게 왔다고 욕하고 옷걸이로 1시간 동안 폭행, 14년 옷을 어질렀다고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방을 치우고 있는데도 계속 발로 차

- 아들이 학교에서 여자 아이 얼굴을 때려 폭대위 열린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나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 11년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매장 직원이 행위자가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모함을 하여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쓰러져 병원에 갔고 피해자라고 주장), 아이들에게 잘해준다고 한 것이었는데 과하게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음. 어느 집안에서나 하는 수준 아닌가?, 부부 불화로 인한 갈등을 아이들에게 푼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배신감도 느낌.

파. 아동보호사건(03년 쌍둥이 남아)

- 홈스쿨링, 13. 3. 11.부터 등교 안시켜

하. 아동보호사건(16세 여아)

- 늦은 귀가에 막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머리채 잡고 아무

것이나 던지고), 청소 안한다고 쓰레기 봉지를 얼굴에 던지고...

거. 아동보호사건(10세 남아)

- 집안에서 떠들고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빗자루로 때려

너. 아동보호사건(7세 남아, 8세 남아)

- 부부는 별거 중, 친모가 술에 취해 아동들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냈다, 친부는 친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부부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됨.

더. 아동보호사건(8세 여아)

- 방학숙제 하지 않았다고 플라스틱 장난감 방망이로 양팔과 정강이를 1회 때림, 허락없이 서랍장에 있던 동전을 꺼내 사용했다고 이마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림.

러. 아동보호사건(15세 남아, 18세 남아)

- 내연녀와 살겠다고 가출하면서 주거지 임대료, 공공요금, 수업료 체납

머. 아동보호사건(13세 남아)

- 흡연하고 학교에서 말썽부린다고 식칼을 들고 손잡이 부위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 8년 전 이혼하고 2남 1녀 양육하는 친부

버. 아동보호사건

- 친부, 평소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했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뒤로 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의 변화

장 화 정 기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정의 변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장 화 정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양육 전문가이면서 보호자인 교사에 의한 강한 손찌검, 매 맞은 아이의 서투른 수습행동, 주변 친구들의 재빠른 반응은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특히나 학대를 당한 아이는 울지도 못했고 자신이 한 행동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더 이상 생기발랄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런 아이답지 못한 경직된 모습에 엄마들은 더욱 분노하였고 다시한번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부모로서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부모 체벌권이 우선되는 문화이다.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은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기에 가정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부모에게 관대한 편이다. 그러다보니 부모는 아이가 잘못하거나 자신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욕설을 퍼부으며 아이인격을 모욕하고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아이의 귀싸대기를 갈기는 등 과격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아이 사망 및 시신 암매장 사건, 더불어 동생 구출사건('98년)은 세간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들은 학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런 일을 저지르는 부모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일거야!' 하는 등 더 이상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그 뒤로 암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99년) 단지 기도를 강요한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아동복지법」으로는 친권을 제한하여 아이를 격리하거나, 아이의 치료를 거부하는 아버지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했다.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하게 하는계기가 되었으며 「아동복지법」개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동보호 서비스 개입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복지법 」 개정 역사,「아동복지법」이 가진 한계,「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의의, 그리고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의 6개월 현황, 아동학대**

특례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 훈육과 학대 경계, 가정내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국민적 함의 필요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아동복지법」 개정 역사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

1)「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 개칭('81년)

'61년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81년 되어서야 법 제명을「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였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사유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을 이루어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단초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00년)

20년이 흐른뒤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을 이루냈다고 밝혔다.

앞서 기술한 대로 두 사건으로 부모일지라도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부모의 일차적인 양육책임을 문제삼고 국가가 개입하여 아이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가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분위기속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3) 아동학대 단독법의 무산결과로 이루어진「아동복지법」전부개정('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힘겹게 아이의 안전과 권리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학대행위자들의 학대행위는 날이갈 수록 점점 흉학해 지고 복지적 접근과 설득만

으로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없었다. 울리는 신고전화를 거부하고 싶었고 아이를 격리하는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상담원들의 신변안전도 보장 되지 못한채 아이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일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10년 단독법안「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18대[42]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 발의 의미는「아동복지법」을 벗어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단독법(안)이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0년 숙원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이 단독법(안)은 지지부진한 채 진행되지 못했고 '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속에 이 단독법(안)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조건이 내걸리고 폐기상태에 이른다. '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 선진국의 법 체계처럼 장과 절의 형태로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 정비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10년간 숙원사업이 좌절되었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내용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 등(제24조).

두 번째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세 번째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제27조)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그리고 행위자의 상담·교육이 가능한 법 제정 논의

단독법(안)이 좌절되었지만 아이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가장 적절한 법안이 무엇

42) 18대국회 일정: 2008년 5월30일부터 2012년5월29일까지임.

인지 또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아동복지법」재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재・제정 등등 다양한 방안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행위로 접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현 범죄 처리 절차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과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선진국 절차도 거론되었다.

판사, 검사,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모여 아이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이를 위한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회의'를 1년간('11. 7 ~ '12. 7) 진행하였다. 그 무렵 '새누리당 아동 학대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안홍준위원장 '12. 5 ~'12. 9)가 결성되어 3개월만에 급하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 '12년 9월에 제안되었다.

지난 18대에 폐기되었던 법안이 다시 부활하여 '12년 7월「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A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제안되었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도 '아동학대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 법안과 가장 유사한 제정법(안)도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12.11월에 제안된「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B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보호조치 또는 임시보호조치의 결정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집행하도록 (안 제17조) 하였으며, 더 중요한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 중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이 담긴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1년 동안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회의'의 결과물이기도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법원과 직접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12년 7월,9월,11월에 법 제·개정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아동복지법」내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단독법 불/필요성 여부, 행위자 처벌과 관련한 형사적 절차를 담은 법무부 주도하의 특례법 제정 등등 상당히 다양한 논리가 상충되다보니 논의는 지지부진하였다. 그리고 연달아 칠곡 사망 사건('13. 8),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13. 10),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13.10)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법 하나 제대로 없고 아동보호 체계가 미약하다는 국민의 질책이 쏟아졌다.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 예산 한푼 지원없이 지방 지자체에서만 맡겨두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엄마들은 울부짖었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결성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사례 1 .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13 10. 울산에 사는 계모 박씨는 2천원을 훔쳤는데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학교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딸00(9세)을 등교시키지 않고 00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아동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이 발족되었고 그 모임의 엄마들은 이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검찰(울산지검)은 A씨에 대하여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4. 3.11). 울산지법 형사3부는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해 살인,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구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아동학대범죄는 일반적인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www.naver.com. 위키백과)

사례 2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울주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던 중 8월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고 이를 받아들인 A양은 그동안 자신이 동생 B(당시 8세)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오던 아이가 대구지법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 통해 자신이 계모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히고 당시 동생의 죽음이 계모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시 대한민국은 아동학대로 국민들이 공분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계모 임 모(35)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동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37) 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의붓딸을 폭행 사망케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원인,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조선일보, 국민일보 ’14. 11).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3.12.31)의 의의

또 다시 아이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서비스는 새로운 국면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나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남인순위원장, '13.11.25)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는 법안 병합논의가 시작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법(안)인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A안)과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B안)을 병합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렸다('13.4). 이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두 법(안)의 병합과 아동복지법과의 통합여부를 판단하는 공청회였다. 더불어 중요한 이슈는 B법안의 주요내용인 가정법원의 역할 강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논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난색을 표하였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상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는 시기상조이며 추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이 좀 더 확보되고 가정법원 확대설치 및 역할강화 이후에 재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조항 중 몇몇을 「아동복지법 통합(안)」에 일부 포함시키고, 또 다른 일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대의견사항으로 의결하여 '국회법제사법위'에 회부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재(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연말에 급하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재(안)」 간담회('13.12.23)가 개최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에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여 회부한 법안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도 피해아동보호명령[43]을 청구' 가능하도록 요청할뿐 아니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속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명령조치가 포함되어 다른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동시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병과될 수 있도록 조항에 첨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드디어 '13.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

43) 법무부·법원 합의안

례법) 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되고 14년만의 결과였다. 이 아동학대 특례법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항이 들어왔으며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이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단지 보호명령 결정조치에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명령 명령이 제외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04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내려간 아동학대예방사업이 **'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소식도 접하게 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범죄피해자지원기금과 복권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

(1) 아동학대 특례법과 가정폭력 특례법의 차이

이 아동학대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개선된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과 가정폭력 특례법을 간단히 비교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제4조), 아동학대중상해(제5조), 상습범(제6조)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벌과 수강명령(제8조)을 통한 학대행위자의 교정, 친권상실청구(제9조)를 통한 아동보호를 강화한 점에서 가정폭력 특례법과 큰 차이점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특례법과 비교해 신고범위 확대(제10조), 응급조치가 있던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제15조), 임시조치 결정 중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19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중 보호위탁, 치료위탁, 가정위탁(제47조), 피해아동보호기간 연장(제51조), 임시보호명령 중 후견인 선임(제52조)과 같은 조항을 통해 아동보호 중심의 법률적 보완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범죄의 특례법 비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해당 없음)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없음)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없음)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⑦ (생략)	(해당 없음)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해당 없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⑨ (생략)	②~⑪ (생략)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④ (생략)

②~⑤ (생략)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은 친권제한 및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강화 및 접근 금지 등이 시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될 뿐 아

니라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 내용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 4 참조>.

먼저 '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된 점을 보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네 번째,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 관계를 회복과 원가정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처벌 및 보호처분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보호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문이다.

3. 「아동복지법」이 가진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한계

(1) 친권제한의 어려움

우리나라는 앞서 기술한대로 '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아이의 안

전과 권리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하였다. 법의 개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4시간 핫라인(1577-1391)을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학대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권리가 침해 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제일차적인 양육책임을 배제하고 공적 원조의 개입을 시도하였으나 이런 개입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친권제한의 문제였다. 매맞고 방치된 아이들의 가정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아이의 안전을 침해하는 가정내에서 아이는 구출되어져야 했지만 현실은 학대행위자가 그들의 부모이자 친권자였다. 그들의 변명은 “자신의 아이가 잘되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때린 것”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기관이길래 와서 부모인 나에게 뭐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상담원을 협박하였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피해아동을 위해 72시간 격리가능하나 (가정)법원의 판결이 아니기에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들은 아이격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아이와 행위자를 조치하고자 하여도 “개입거부”로 종결되기 일쑤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안전을 책임지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적 접근만을 가지고는 사실상 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을 시키거나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나 아동 사망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국민들과 사법기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을 고발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 교육 조항 부재

아동학대 신고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은 처벌받아야 하는 수준보다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아동양육기법과 아동과의 의사소통기술, 부모 스스로의 분노조절 기법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특성 중 ‘양육태도와 양육기술부족’이 32%(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자들에게 양육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므로 상담과 교육의 참석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상담 및 교육을 거절할 뿐 아니라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개입거부 의사를 표명한다.

이처럼 부모인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자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강력히 거절하면 그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이의 안전과 보호에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상담·치료 서비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아동복지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더 강력한 법안 요구들이 시작되었다.

(3) 기소 및 실형이 쉽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여러가지 물리적 자원과 심리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다. 더불어서 학대행위자들을 구속시키고 처벌을 하기 보다는 복지적 접근을 근간으로 원가정에 아이를 복귀시키고자 하였으며 가정기능회복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13,000여건의 신고건수중 6,800여건이 학대로 판정이 되었고 그 중 단지 544건(8%)만이 기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하는데 그쳤다<표 2 참조>. 신고접수를 받고 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행위자를 설득하고 설득하여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정을 지원하다보니 사건은 지지부진 처리된다는 평가를 자주 듣게 되었다.

<표 2>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계
5,220 (76.8)	372 (5.5)	544 (8.0)	660 (9.7)	6,796 (100.0)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많은 사건들이 재학대[44]로 이어졌다. 특히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초창기는 부모나 교사인 보호자가 아이를 때리는 일은 별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고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았고 또한 가정내 은밀한 폭력이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심지어 아이들의 진술이 지속적인 신빙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사건이 진행되어도 기소[45]가 되지 않았다<표 3 참조>.

44) 2013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4). 2013년의 재학대 사례는 총 98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6,796건 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구 분			건 수
경찰수사	수사중		151(27.8)
	내사종결		**44(8.1)**
	소계		195(35.8)
검찰수사	수사중		81(14.9)
	불기소		**37(6.8)**
	소계		118(21.7)
재판진행중	1심 진행		58(10.7)
	항소심 진행		16(2.9)
	상고심 진행		4(0.7)
	소계		78(14.3)
판결	보안처분	접근행위제한	3(0.6)
		사회봉사	3(0.6)
		수강명령	3(0.6)
		보호관찰	1(0.2)
		상담위탁	2(0.4)
	소계		12(2.2)
	형사처분	무죄	2(0.4)
		징역	60(11.0)
		벌금	24(4.4)
		집행유예	9(1.7)
		기재 안됨	8(1.5)
	소계		103(18.9)
	보호처분+형사처분	징역+수강명령	10(1.8)
		징역+보호관찰	1(0.2)
		징역+친권행사제한	1(0.2)
		징역+접근제한	2(0.4)
		징역+사회봉사	5(0.9)
		징역+기타	7(1.3)
		징역+파악안됨	2(0.4)
		집행유예+사회봉사	2(0.4)
		집행유예+수강명령	1(0.2)
	소계		31(5.7)
파악안됨			7(1.3)
계			544(100.0)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또 한가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기본 양형기준으로 적용되다보니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판결되었고 행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상담원의 신변보장의 어려움

마지막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상담원의 신변보장 문제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학대현장을 빠져 나올 수 없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정황과 학대혐의를 판단하고 아이를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의 결정이 단독결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위자들은 상담원에게 욕설과 비난, 폭행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망치로 상담원을 가격하고 공기총을 발사하는 등 상담원의 신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표 4 참조> 상담원의 이직율[46]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4> 상담원 신변안전 위협사례 현황

(단위 : 회)

계	언어 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자해		공포 분위기 조성		재물 손괴		위협에 의한 건강이상		위협에 의한 사직 (이직)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조사단계	판정이후
254	42	98	12	13	0	4	5	2	21	38	0	5	3	9	0	2
	140		25		4		7		59		5		12		2	

* 상담원 신변안전 위협 사례는 2010.09~2011.12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아동학대 참고자료집 내부자료.

4.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14.9.29~'15.3.28)[47] 6개월 현황

본 자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특례법 이전('13.9.29~'14.3.28)과 특례법 이후('14.9.29~'15.3.28) 기간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 특례법 이후 6개월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동일한 기간을 기준삼아 지난 1년 전과 후를 비교 분석 함으로서 아동학대 특례법의 시행이후 아이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얼마나 더 안전해 졌는지, 그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율 2014년 8월 현재 31%
47)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실시간 DB이므로 본 자료는 '15. 3. 31 추출한 자료임.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이때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6,200건에서 8,574건으로 38.3%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2신고는 4,253건(49.6%)으로 아동학대 특례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로 신고 들어왔던 것의 절반이 112를 통해 범죄 신고로 접수 되었다. 한가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전화로 신고가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112 신고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국민적 인식도 참고하여 '착한신고'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표 5 참고>.

표 5 **신고접수 현황 (경로별)**

(단위: 건, (%))

	112	일반전화	119	129	1366	인터넷	아보전 내방	총 계
특례법 시행 이후	**4,253** **(49.6)**	**3,934** **(45.9)**	13 (0.2)	14 (0.2)	90 (1.1)	25 (0.3)	245 (2.9)	**8,574** **(100.0)**
특례법 시행 이전	**-** **-**	**5,634** **(90.9)**	6 (0.1)	258 (4.2)	- -	13 (0.2)	289 (4.7)	**6,200** **(100.0)**

1-2)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현황 중 학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아동학대 특례법 이후 전체 (응급)아동학대의심사건 신고접수 현황이 7,278건으로 특례법 시행 이전 5,084건에 비해 43.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아동학대의심사건에 대해서도 872건에서 1,123건으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에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아동학대의심 사건에 대해서도 4,212건에서 6,155건으로 46% 늘어났다<표 6 참고>.

표 6 신고접수 현황 (유형별)

(단위: 건, (%))

	( )아동 학대의심소계	응급아동 학대의심	아동학대 의심	일반상담	동일신고	총 계
특례법 시행 이후	**7,278** **(84.9)**	1,123 (13.1)	6,155 (71.8)	1,241 (14.5)	47 (0.6)	8,574 (100.0)
특례법 시행 이전	**5,084** **(82.1)**	872 (14.1)	4,212 (68.0)	1,099 (17.7)	16 (0.3)	6,200 (100.0)

2) 현장조사시 경찰 동행 현황

현장조사시 경찰 동행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 이후에는 5,486건(41%)이 동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과거 1년전에는 단지 380건(3.5%)에 비해 약 14배가 늘어났다는 것이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서로 통보하고 동행하여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신속히 출동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행동이 5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조사가 1차로 끝나지 않고 2~3차로 이어지면서 아이나 상담원의 안전은 확보된 이후의 현장조사에 대해 경찰은 비동행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표 7 참조>.

표 7 현장조사 경찰동행 및 출동시간 현황 (단위: 건, (%))

		비동행	총 계
특례법 시행 이후	**5,486(41.5)**	7,748(58.6)	13,234(100.0)
	출동시간 10.9시간*		
특례법 시행 이전	**380 (3.5)**	10,383 (96.5)	10,763(100.0)
	출동시간 23.8시간*		

*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출동까지의 시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특례법 시행 이전 23.8시간인 반면 특례법 시행 이후는 **10.9시간으로 상당히 신속히 출동하는 것으**로 보여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2015).

3)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신고현황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크게 눈에 띄는 증가폭은 보이지 않으나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드림스타트가 신고의무자로 새롭게 추가되어 신고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 자신이 신고한 경우와 학대하지 않은 부모의 학대 신고도 늘어났다. 더불어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신고전화는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학대행위자가 학대범죄자로 처벌 받는 것에 대해 아직은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표 8 참조>.

표 8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신고현황 (단위: 건, (%))

		시행 이후	특례법 시행 이전
총 계		7,278 (100.0)	5,084 (100.0)
신고의무자	소계	**1,855 (25.5)**	1,504 (29.6)
		709 (9.7)	**406 (8.0)**
	의료인	64 (0.9)	63 (1.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90 (1.2)	146 (2.9)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5 (0.2)	8 (0.2)
	보육교직원	154 (2.1)	113 (2.2)
	유치원교직원,강사	37 (0.5)	8 (0.2)
	학원강사	6 (0.1)	6 (0.1)
	소방구급대원	23 (0.3)	6 (0.1)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3 (0.0)	6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5 (0.1)	5 (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20 (1.7)	84 (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9 (2.7)**	**343 (6.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94 (1.3)	75 (1.5)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 (0.0)	17 (0.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1 (0.4)	79 (1.6)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7 (0.1)	9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8 (0.3)	13 (0.3)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6 (0.5)	25 (0.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5 (0.2)	19 (0.4)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4 (0.1)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68 (1.0)	62 (1.2)
	청소년보호-재활센터종사자	4 (0.1)	7 (0.2)
	아이돌보미	- -	- -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156 (2.1)**	- -

비신고의무자	소계	5,423 (74.5)	3,580 (70.4)
		836 (11.5)	**92 (1.8)**
	부모	**1,534 (21.1)**	**685 (13.5)**
	형제,자매	131 (1.8)	23 (0.5)
	친인척	271 (3.7)	218 (4.3)
	이웃,친구	511 (7.0)	462 (9.1)
	경찰	370 (5.1)	344 (6.8)
	종교인	14 (0.2)	12 (0.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304 (18.0)**	**1,534 (30.2)**
	낯선사람	143 (2.0)	41 (0.8)
	익명	86 (1.1)	7 (0.2)
	기타	223 (3.1)	162 (3.2)

4) 조치 현황

(1) 피해아동 응급조치[48] 현황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하는 조치이다.

이번 6개월 동안 7,278건의 신고접수된 사건중 중복조치로 492건(6.8%)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으며 이처럼 아이들이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임시조치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시까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는 연장이 가능하다.

아이들을 위한 응급조치는 3. 보호시설로 인도가 332건(67.5%)으로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표 9 참조>. 아동학대 특례법의 응급조치 현황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이루어지고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기에 좀 더 심사숙고 하는 듯 하다.

<참고 1>에 피해아동 초기조치 상황을 비교하고자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6개월과 작년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았더니 격리조치가 402(24.9%)에서 1,233(30.7%)에서 약 6%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출동하면서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48) 1. 폭행 등 학대행위의 제지, 2. 격리, 3. 보호시설로 인도, 4. 의료기관으로 인도

표 9 **응급조치 현황**

(단위: 건, (%))

	1	2호	3호	4호	총 계 (중복집계)	실건수*
총계	56(11.4)	83(16.9)	**332(67.5)**	21(4.3)	**492(100.0)**	**382**
경찰	38(17.4)	54(24.7)	116(53.0)	11(5.0)	219(100.0)	152
아보전	18(6.6)	29(10.6)	216(79.1)	10(3.7)	273(100.0)	230

* 응급조치가 취해진 실건수는 382건이며 응급조치는 중복가능함

참고자료1 **피해아동조치결과 (초기조치)**

(단위: 건, (%))

	원가정 보호	격리 조치						사망	총 계
		친족 보호	연고자에 의한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특례법 시행 이후	3,048 (76.0)	324 (8.1)	43 (1.1)	5 (0.1)	708 (17.6)	115 (2.9)	38 (0.9)	12 (0.3)	4,013 (100.0)
		1,233(30.7)							
특례법 시행 이전	1,208 (74.9)	80 (5.0)	11 (0.7)	2 (0.1)	240 (15.0)	50 (3.1)	19 (1.2)	3 (0.2)	1,613 (100.0)
		402(24.9)							

(2)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49]의 구체적 사항

(2-1) 임시조치 실 건수 현황

임시조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임시조치가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는 학대범죄가 재발 될 것을 우려하여 아이의 안전에 보다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이다. 임시조치 현황을 실 건수로 알아보았더니 임시

49)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양육권 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5. 교육 위탁,** 6.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7.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를 신청을 요청하거나 청구한 결과는 232건이었고 법원의 결정은 266건이었다.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이나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검사직권이나 신청 요청된 건을 법원에 청구한 결과역시 81%(평균)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에 의해 법원에 청구된 조치 중에서도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도 95.5%를 차지하고 있어 임시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응급조치가 실건수 382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조치가 실건수 232건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10 **임시조치 실건수 현황** (단위: 건, (%))

		건수		
		결정	거부	총계
조치결과	신청결과	89(73.0)	33(27.0)	122(100.0)
	청구결과	99(90.0)	11(10.0)	110(100.0)
법원결정		254(95.5)	12(4.5)	266(100.0)

(2-2)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의 현황을 법원결정을 중심으로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 100m 이내의 접근 금지가 199건(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5호 교육위탁이 123건(23.3%),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108건(20.5%), 그리고 1. 퇴거 등의 격리가 70건(13.3%)를 차지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병과해서 결정할 수 있고 이 모든 조치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담원이 단독 결정하는 부분들이 형사적 절차를 거쳐 경찰과 검사, 판사에 의해 결정되어져 강제적으로 복지적, 치료적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11 **임시조치 현황 (조치요청, 조치결과, 법원결정)**

(단위: 건, (%))

절차 분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총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검사	신청** 결과	32 (16.5)	48 (66.7)	40 (55.6)	13 (18.1)	5 (6.9)	6 (8.3)	**72 (37.1)**	37 (19.1)	8 (4.1)	35 (18.0)	10 (5.2)	194 (100)
	청구*** 결과	28 (13.8)	50 (57.5)	54 (62.4)	63 (72.4)	10 (11.5)	7 (8.0)	**87 (42.9)**	44 (21.7)	5 (2.5)	31 (15.3)	8 (3.9)	203 (100)
법원		**70 (13.3)**	112 (56.3)	112 (56.3)	126 (63.3)	16 (8.0)	16 (8.0)	**199 (37.7)**	**108 (20.5)**	16 (3.0)	**123 (23.3)**	12 (2.3)	528 (100)

* 2호 조치의 개별 수치 및 퍼센트는 2호 전체 건수(중복집계) 대비 건수/비율을 의미함.

** 신청을 요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음

*** 청구: 검사가 직권 및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

* 임시조치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조치요청이 시행된 바가 없어 항목에서 제외.

* 사법경찰이 청구 신청한 건수는 확인이 어려워 수치 미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다. (긴급)임시조치를 신청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는 피해아동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임시조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다시 학대현장으로 돌아가는 사건들도 있었다. 이는 상담원과 경찰, 검사, 판사 사이에서 학대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상담원들은 임시조치에서도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 행사의 제한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병과되기를 원하지만 (가정)법원의 조치결정을 보면 4. 친권·양육권 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6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행위자가 친권을 주장하거나 아이가 악몽을 꾸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데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지 못하고 설령 의료기관에 아이가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친권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러가게 된다. 이처럼 친권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법

원에서는 심리도 이루어지기 전 아이의 친권자를 친권제한 행사를 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즘은 SNS을 활용하여 아이를 협박, 회유 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하여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조치결정이 중요한 조치의 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3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자, 카톡 등을 받게 되면서 아이는 불안해져 진술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게 되는 등 원할한 조사나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앞서 기술한대로 임시조치의 경우 당연히 판사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친권행사의 제한이 다소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행위자에 대한 재발의 위험을 고려해서 아이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될 수 있는 임시조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2>에서 나타났듯이 특례법 시행 이후는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절차를 따라서 경찰에 고소장과 고발장 접수된 것이 100여건에서 970여건으로 8.7배정도 늘어났으며 아이를 그 가정에서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배치하는 것도 70건에서 230건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참고 2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아동과의분리	고소고발	만나지못함	총 계
시행 이후	2,940(68.5)	230(5.4)	**972(23.0)**	151(3.5)	4,293(100.0)
특례법 시행 이전	1,320(81.8)	70(4.3)	**106(6.6)**	117(7.3)	1,613(100.0)

(3) 긴급임시조치[50] 신청 현황

사법경찰관리는 아이를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긴급임시조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14건이 이루어졌으며 2호 100m 이내의 접근금지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1호 퇴거 등의 격리와 3호

50)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이루어졌다<표 12 참조>.

표12 **긴급임시조치 신청현황**

(: 건, (%))

	1호	2호					3호	총 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3 (21.4)	3 (21.43	1 (7.1)	4 (28.6)	- -	- -	3 (21.4)	14 (100.0)

* 본 조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신청한 긴급임시조치에 한함.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청요청한 임시조치 내용과 경찰이 신청한 임시조치내용, 그리고 검사가 직접 청구한 내용, 그리고 가정법원의 판결결정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건이 절차대로 다 진행되지 않았고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5) 피해아동명령[51] 청구 및 결과 현황

아동학대 특례법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형사적 절차를 배제하고 피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장,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보호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항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기 전에도 임시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로 하고 피해아동이나 그

51) 1. 퇴거 등 격리 2. 행위자가 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행위 제한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 의료기관 치료위탁, 7.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사표시갈음결정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표 13 >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시 아동 임시보호가 필요하다 청구를 107건하였으며 가정법원은 43건(40%)만이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동시에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구건수는 107건 중 105건(98%)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해서는 잠시동안이라도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43건 중 29건(67%)이며, 임시보호가 불필요하다는 판정 역시 14건(32.6%)을 받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피해아동보호 수준과 (가정)법원에서 생각하는 피해아동보호 수준의 정도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서는 소명자료가 부실하여 그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없을 때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소명자료 제출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을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장에서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아동보호명령 그 결정까지 2~3개월 소요되고 있어 학대아동의 신속한 안전 조치 등의 효과성에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임시보호명령뿐 아니라 보다 신속히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될 수 있는 고민을 (가정)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례적인/비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지역의 (가정)법원과의 연례간담회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서 현재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15년하반기 준공예정) 6곳에 설치되어 있기에 아이들을 위한 조치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 아동학대사건 판사, 가정법원이 더 많이 확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13 **피해아동명령 청구 실건수 현황 및 청구 결과 시 아동 임시보호 필요 여부**

피해아동명령청구상황	임시보호필요	임시보호불필요	실건수	진행중/미기입
청구	105 (98.1)	2 (1.9)	107 (100.0)	64
청구결과	29 (67.4)	14 (32.6)	43 (100.0)	

<표14.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명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고 전체 197건(중복신청) 중 147건(74.6%)을 신청하였다. 여기서 피해아동이 직접 법원에 스스로를 보호받고자 함을 청구하는 상황도 47건(23.8%)을 차지하고 있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변호사를 파견근무 시행)에 의한 청구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주 변호사가 배치될 때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사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

표 14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단위: 건, (%

실건수 107	1.퇴거 등 격리	2.접근 제한	3.전기통신 접근 제한	**4. 시설 위탁**	5.치료 위탁	6.가정 위탁	7.친권 제한 정지	**총계 (중복집계)** 197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77	1(0.7)	41(27.9)	20(13.6)	**69(46.9)**	3(2.0)	3(2.0)	10(6.8)	**147(100.0)**
피해아동 29	1(2.1)	8(17.0)	8(17.0)	**29(61.7)**	0	0	1(2.1)	**47(100.0)**
변호사 1	0	1(33.3)	1(33.3)	**1(33.3)**	0	0	0	**3(100.0)**

* 8. 후견인제한정지 9.의사표시갈음결정은 청구되지 않았음.

표 15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결과**

전체 실 건수 43		2.접근 제한	3.전기통신 접근 제한	4.보호시설 위탁	5.치료 위탁	7.친권 제한 정지	9.의사표시 갈음 결정	결정총계 (중복집계)
결정 실 건수	거부 실 건수							
41 (95.3)	2 (4.7)	21 (24.4)	16 (18.6)	37 (43.0)	2 (2.3)	7 (8.1)	3 (3.5)	86 (100.0)

* 1.퇴거등격리, 6.위탁가정, 8. 후견인정지제한은 결정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197건 중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들여 86건(43.6%)이 이루어졌다.
이때 피해아동에 대한 명령이 39건(45.3%)가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명령이 37건(43%)를 차지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37건(43%)가 이루졌다.

한가지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당시 피해아동보호명령 종류에 학대행위자의 교육·상담명령 조항이 빠져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되는 바이다.
이렇게 되면 경미하거나 교육 상담만으로 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 운영상의 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조기정착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2014).아동학대 참고자료집 참고>

1) 법 정부 합동 종합대책 발표

'14. 2.28 보건복지부・법무부・여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발표함으로써 (조기발견) 신고의무자 개개인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 (신속대응) 초기 현장출동 단계 반드시 경찰 개입, (보호·지원) 피해아동 치료 및 보호강화, 가해부모 상담・교육 의무화 (인식개선) 아동 권리교육 실시, 부모 교육 제공, 홍보・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였다.

2) 주요추진 실적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① 일반 국민, 아동, 부모 별 맞춤형 교육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www.childsafedu.go.kr)을 통한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복지부・교육부)
○ 찾아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예방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 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실시(여가부)

* 가족교육 46만명, 가족상담 25만명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 교재 제작('14.6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자아개발, 어린이집 이해 등 부모 교육 실시(복지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보육교직원・학부모 55,584명)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복지부・여가부)

* '좋은 이웃, 집에서는 가혹한 범죄자'('14. 1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14. 5월), '관심 편'('14. 5~7월상영), '잠깐만 캠페인'('14. 8월, MBC)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실시(관계부처 공통)

* 반상회보('14. 2월), 정부전광판('14. 3월, 5월, 7~9월), 유튜브('14.8~9월), 국정만화('14. 8월), 버스정류장('14.12월), 아동학대 예방 공식 트위터('14. 3월), 포스터・전단지(스마트폰, 영웅, 넌중), 조형물 설치(바이럴 영상 제작, 페이스 북 등 50만명이상 시청)

○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아동단체(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결의대회('14.8월), 온라인 캠페인('14. 9월~), 한국여성변호사회('14. 3월)・현대자동차('14. 7월)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및 보라데이(매월 8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복지부・여가부)

[3]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복지부)

○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제도 신설

* '14. 9.29. 이후 아동학대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종료 후 10년간 취업 금지

(2)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 신고의무자용 표준교육자료 4종 완성(전단지, PPT, 동영상, 수첩)(복지부)

○ 신고의무자 직군별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 교육

* 초중고교 교직원 자체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점검('14.5~10월), 학원·교습소 12만명 교육, 소방사 570명, 응급구조사 2,406명

* 관련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협회를 통해 신고의무자 약 140만 명 개개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자료 보급

○ 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인권 관련 시·도교육청 핵심요원 연수,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연수 및 학교별 전달 연수 실시('14. 7월~12월, 교육부)

○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신고의무자 추가,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상향(법무부)

○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4. 12월, '15. 4월 공청회, 복지부)

(3)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1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복지부·법무부·여가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회의 정례화(12차례, '15년 4월 13번째 회의 계획중)

○ 기관 별 역할 명확화, 단계별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9월)

* 특히 경찰의 초기 현장대응 등 공적 기능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부모 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도록 업무효율성 강화 도모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검찰의 각종 조치 시 공통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5~10월, 법무부)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상호 사건 통보 및 현장출동 동행 활발, 112 신고접수 시 반드시 현장출동(경찰청)

* 현장 동행출동 건수 :

'특례법 시행 이전 380건 → '특례법 시행 이후 5,486건 (13배↑)

○ 검찰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임시조치 청구를 위한 제도 마련(특례법 반영),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관련 규칙 제·개정('14.10월)(법무부)

*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에 성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도 추가

* 진술조력인 사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15.1월)

○ 경찰·검찰·법원의 아동학대 가해자 엄중 처벌 추세(법무부, 경찰청)

○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범죄신고 긴급번호(112)로 통합('14. 9월, 복지부・경찰청)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검찰 직무역량 강화

○ '14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전 직원은 직급 별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복지부)

○ 全 경찰관 대상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 아동학대 전담조사관 대상 아동 조사기법 교육, 지방경찰청 이행실태 점검(경찰청)
○ 신규 임용 검사 교육, 성폭력 전담 검사 교육 완료('14. 2월, '15. 3), 아동학대・가정폭력 전담 검사・수사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14. 3~4월, '15. 3월)(법무부, 경찰청)
○ 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워크샵('14. 7월)(법무부),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워크샵('14. 7월)(경찰청)

(4) 피해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상근, 6개소 방문 심리치료사 배치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 또는 외부 심리상담소 연계(복지부)
○ 경미한 아동학대 발생 시에도 부모 등의 상담・교육 의무부과(법무부・복지부)및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마련('14. 12월)(복지부)
○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14. 4~10월, 복지부)
* 참가학생 400명, 주1회 가정방문(2인1조)하여 학습지도 및 학대발생 모니터링

3) 주요 성과 및 평가

(1) 아동학대 특례법 조기 정착을 위한 다체계간 적극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킴

○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2014)」**을 제정하여 긴밀한 공조 토대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및 아동학대 전담 경찰·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완료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 인지도가 낮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범죄신고 긴급번호(112)로 통합하여 신고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대응 강화 추진

(2)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 '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252억원(범죄피해자기금/복권기금;169억배정+추가83억. 전체 예산 488억) 확보함으로써 인프라 대폭 확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56개소
○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쉼터 36개소→58개소
○ 추후 '17년까지 100개소 계획 추진[52].

□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노력

○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가해자 엄중처벌

□ 아동단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출동 차량 60대 기업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IT 물품 지원 등

6. 훈육과 학대 경계, 가정내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5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아동학대 참고자료집 내부자료.
- 우리나라 : 인구 100만명(아동인구는 20만명)에 평균 1개소 설치
- 미국 펜실베니아주 : 아동인구 10만명에 1개소 설치
- 일본 : 인구 50만명에 평균 1개소 설치

1)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 및 다양한 조치 결정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중 하나가 “아동학대가 범죄라면 가정내 학대가 8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할 생각이신가요?” 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로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건의 경중으로 보아 다각적인 아동보호사건 처리결과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사건으로도 처리하고 성행(性行)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조건부유예시에도 상담, 치료,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그들에게 개선에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법적 강제수단을 추가함으로서 행위자 설득으로 지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임시조치나 보호조치라는 징벌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교육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과 예방, 그리고 원가정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아동보호절차를 고민하고 이런 제도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2)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작년 연말에 국제아동권리포럼(2014. 11. 18)을 개최하여 “ ’14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100인의 아동 원탁토론-아동,아동권리를 말하다와 200인의 성인 원탁토론-내가하면 훈육, 남이 하면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 없다면 아동학대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에서는 ① 아동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시대 착오적 부모관이 없다면 아동학대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②사회적으로 저급한 아동인권 인식이 없다면 아동학대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로 뽑혔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으로는 ①부모의 그릇된 욕심과 기대(성급함, 학업위주, 아동폭력 정당화), ②아동양육방법 교육기회 전무 ③허술한 예방 및 대응시스템 ④고립된 가정환경 및 부부갈등을 원인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 신체적 체벌이 「아동복지법」으로 금지

특히나 최근 어린이집학대사건, 울주사망사건, 칠곡사망사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이도 한 인격체이며 권리의 주체' 이기에 함부로 다루면 안된다는 인식이 보다 확고하게 되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폭력사용은 자제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폭력사용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국민적 법 감정을 토대로 남인순의원은 「아동복지법」을 개정안에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아이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법률로 금지'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15.03).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때리는 것과 아이의 잘못을 폭력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같이 합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아동학대의 형벌적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변화 지표로 보인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의 신설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을 지도할 때 아동을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성, 폭언 행위 또한 금지 될 것을 명문화를 준비하고 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하는 학대 판단시 고려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학대를 의심해 본다. 이때 반드시 반복성, 과거학대행위 전력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상황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들은 훈육차원으로 한 행동이라는 변명을 항상 주장하기에 훈육시 감정상태는 이성적이었는가?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었는가? 훈육의 환경은 아이 연령에 맞게 합리적이었는가 ? 혹시 도구가 사용되었는가? 맨손일지라도 뒤통수, 얼굴 등을 가격하는가를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대판단시 고려사항이다<참고3 참조>.

나가며

과거 우리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권선징악'을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 우리는 그 '개인과 그 가족이 누려야할 권리를 추구'하고 지켜내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그만큼 권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

회에서 아이의 지위나 양육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었는지도 알게 되면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이제 범죄 행위가 되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갯수가 적어 경찰과 동행 출동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경찰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통보가 신속히 이루어져도 출동이 불가능한 상담원 인력이기도 하고 또 사건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혼자서 사건을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응급조치는 이루어졌는데 임시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해 상담원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기에 쉽사리 판결의 변화가 여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솜 방망이식 판결이라는데 불만도 있기도 하다. 비공개 시설 주소를 두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결정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과 보호자인 학대행위자에게 아이들이 피신해서 생활하는 곳을 고스란히 알려줄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쉼터의 주소를 고지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기관과의 입장 차이로 난감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변화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인다.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신고된 피해아동을 신속히 구출하고 그리고 그 가족에 변화를 주기위해 오늘도 협업하는 경찰, 검사, 판사님,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변화되리라고 기대한다. 이 희망은 아이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과 아이의 권리는 지켜내고 확보해야 한다는 동일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3〉 아동학대 판단 시 고려사항

관계부처합동(2014)아동학대 공동업무 수행지침 P74-75

① 학대행위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판단

- 학대행위의 반복성
- 과거 학대행위 전력 여부
- 학대행위의심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 시도 여부
- 학대행위의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나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상) 과실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조치 적용

※ 고의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학대행위의심자의 (업무상) 과실의 예
- 아동간 다툼을 중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신체 접촉과정에서 아동이 교사 등 종사자의 신체 일부와 부딪혀 상흔(코피 등)이 발생한 경우
- 아동의 화장실 지도 중 아동이 교실로 이동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장실 불을 꺼서 수초간 아동 혼자 화장실에 있게 된 경우
- 부모가 방문을 열다가 문 뒤에 있던 아동이 문과 부딪쳐 신체 상흔이 발생한 경우

- 집단시설의 경우 실내·외 환경,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은 동행한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가 점검(시설별 법적 근거)하도록 하며, 해당 사안이 아동의 안전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위험발생여부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만 아동학대로 판단

② 훈육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

-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훈육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여야 함

■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

*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아동의 행동에 대해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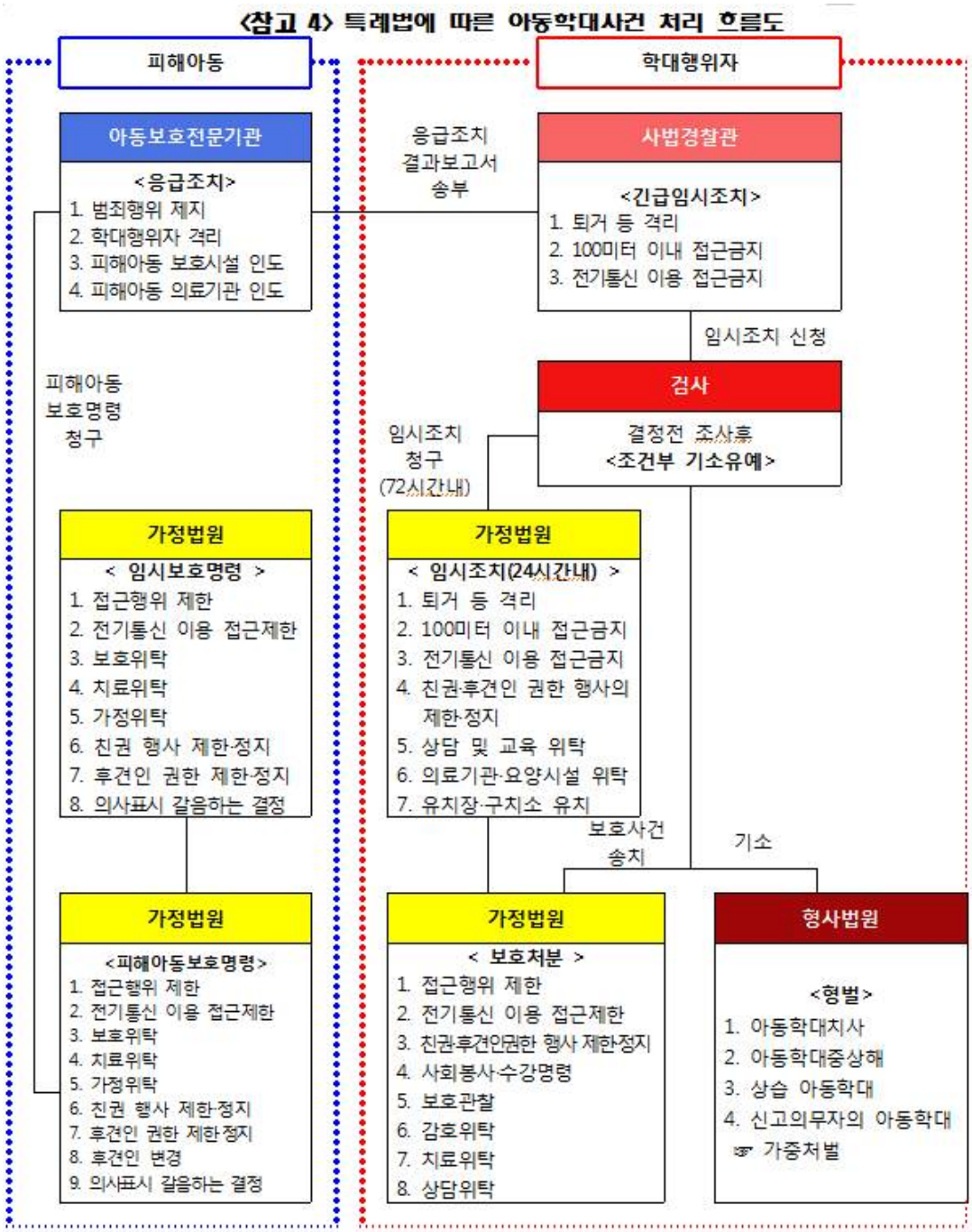
-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예 :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 부적절한 정서반응의 예
-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

-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

■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이 발생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됨**


〈참고 4〉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
1. 범죄행위 제지
2. 학대행위자 격리
3.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4.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송부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검사
결정전 조사후
<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청구 (72시간내)
가정법원
< 임시보호명령 >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 보호위탁
4. 치료위탁
5. 가정위탁
6. 친권 행사 제한·정지
7. 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8. 의사표시 갈음하는 결정
가정법원
< 임시조치(24시간내) >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5.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7. 유치장·구치소 유치
보호사건 송치
기소
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 보호위탁
4. 치료위탁
5. 가정위탁
6. 친권 행사 제한·정지
7. 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8. 후견인 변경
9. 의사표시 갈음하는 결정
가정법원
< 보호처분 >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 친권·후견인권한 행사 제한·정지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감호위탁
7. 치료위탁
8. 상담위탁
형사법원
<형벌>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상습 아동학대
4.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가중처벌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관련 법령집.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아동학대 참고자료집 내부자료.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www.childsafedu.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org)
네이버 (www.naver.com.) 위키백과
조선일보, 국민일보 '14. 1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좌장

안동현 교수 (한양대학교 소아정신과)

토론자

김경희 교수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홍관표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인 교수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남희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채혜정 교수 (명지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등, 그 기준을 현장에서 찾다.

김경희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오늘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에 관한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아동이나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25년이나 되었음에도 아직도 아동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 아동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유엔은 1989년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간'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선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을 권리의'대상'이 아닌'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어린이를 연약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우선 성인(힘을 가진자)은 아동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나와 함께 세상을 보고 적응을 시작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내가 보여주는 세상이 앞으로 아동이 보고 살아갈 세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원칙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의 연령 기준'으로 어린이란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둘째 '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학대 가해자들이 아동의 문제 해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폭행을 훈육의 일종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다.

훈육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훈육은 사회 규제나 학교의 규율과 같이 사회적으로 명백히 요청되는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해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 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교육학 용어사,1998). 사회적 규제나 학교의 규율과 같은 명백히 요청되는 행위를 계발하기 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조장시켜주는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훈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 통제를 통해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교정하는 긍정정인 활동을 훈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시도를 말한다. 김경희(2000)는 그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가치체계를 아동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와 동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훈육이란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발달시켜 건강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는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데 긍정적인 개념은 자기훈련과 자기통제를 강조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개념은 외적인 권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훈육은 아동의 감정을 자유롭게 반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창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자녀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습관화시켜서 자신의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하며 건전한 인격형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훈육이란 미 성숙된 아동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발달시켜 건전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부모의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자들은 가드너(Gardner, 1969)의 의견에 입각해 벌이 학습을 쉽게 할 뿐 아니라 벌에 의한 자극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자들은 처벌은 처벌을 주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공격행동을 하거나 그 처벌과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학생에게 공격행동을 하며 어떤 사람은 모멸감과 열등감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며 벌의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벌을 받음으로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 자아상과 공격성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체벌 외에 교사가 '왕따'를 조장하고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이 차별과 언어적인 폭력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아동의 인격을 짓밟는 엄연한 학대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다.

보도자료나 오늘의 발표자료에서 무수한 학대사례를 들었다. 사건, 사고 사례외에도 일상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비일비재하게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사건사고로 신고된 아동학대의 사례에 대한 발표자들의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고된 아동학대외에도 주변의 놀이터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쇼핑센터에서 또는 버스안에서 등등 쉽게 관찰이 가능하다. 올 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며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아동학대가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우리는 훈육과 양육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아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육해요". "말로 해선 안들어요"," 안때리고 어떻게 키워요", "애들은 그저 혼이 나야 말을 들어요 " 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대부분의 부모나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한다. 이들은 아동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 씨끄러 니가 뭘 알아, 머리는 컸다고", "엄마(선생님)가 말하면 '네'하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등의 말로 힘을 행사한다. 내가 상담한 아동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며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컸어요. 그래도 잘자랐는데 애는 왜이런지 모르겠어요"라며 아동학대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태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했나요". "체벌을 받아야 알아 들었나요". 라고 묻고 싶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아동의 행동에 분노하는 분들에 "아동이 할 때까지 기다려 준적이 있나요", " 아동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나요", "아동을 벌주기 전에 아동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라고 묻고 싶다.

아동이 성인과 다른점이 있다면 아직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몸집도 적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단지 이러한 이유로 아동을 가르치는 성인이 아동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여야 한다. 훈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체벌한다면 이는 학대인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 아이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안했어, 그래 잘못했지, 몇 대 맞아야 해, 네가 말해봐" 라는 말을 아이에게 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몇 대맞는 것에 대해 아동이 결정한 것이라며 손바닥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린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모는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지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부모중심인 것이다.

아동훈육, 아동학대 모두 아동이 앞에 들어간다. 이는 아동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동중심이라면 아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맞은 아동은 말한다. "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몇 대맞아라고 물으면 어떻게 안맞는다고 해요. 맞는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을 꼭 맞아야한 하나요.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로도 알아들으니까요. 다음에 안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실수를 안하나요? 그래도 안맞잖아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위계적 사회구조, 부모의 권위, 가족화합 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양육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은 한국인의 사고, 감정과 행동에 팽배해있어 한국사회에서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교육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정당화되어왔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사랑의 매 장면이 아동구타, 아동폭력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말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과 판단이 검찰, 정부, 국민, 국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훈육·양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다.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깊게 남아있는 '사랑의 매' 사상은 그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유교적사상이 깃든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검찰도 아동학대 문제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아동학대가 훈육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법적 관점에서의 훈육과 양육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 관점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교육사상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유교적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은 자녀와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가장 쉬운 훈육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면 용인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게 되는 체벌로 인해, 체벌이 학대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2015헌마1189 결정에서는 청구인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불가

피한 경우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의 절차준수', '방법의 적절성', '정도의 지남침 여부', 등의 기준을 놓고 사안의 경우에 해당한느 교사의 체벌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도 체벌에 대해 허용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음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판결인 2001도5380에서는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의 차이를 놓고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직접체벌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직접체벌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모독,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간접체벌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아동,청소년의 존점성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체벌 또한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박연주, 김정우, 2014).

학생인권보호측면에서 그리고 인권의 실질적 보장의 측면에서 간접적, 직접적 학교 체벌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체벌 법규는 예외적 허용이라는 해석을 낳게 하여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체벌 법규는 그 법규상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체벌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여전히 미성년자를 훈육하는데 있어서 체벌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문제임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체벌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수용은 체벌이 교육적 효과보다는 아동인권의 정신적 상처유발과 폭력을 낳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아동인권존중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마련되는 계기를 제시하였다. 후에도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유교적 관념에 따른 문화적 견해로 인해 체벌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체벌 완화를 위해 입법 정책적 방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대와 훈육의 명확한 경계를 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 개개인이 훈육의 방침을 정하여 교사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훈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훈육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현장에서 훈육을 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학생에게 그것에 대해 분명히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규칙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인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바람직한 행동 모델 또한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 있는 훈육방침과 교사가 감정조절이 되지 않을 때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의 규칙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함께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권과 관련된 홍승애

(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율적, 독립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의 적극적 참여권리의 확보가 아동의 체벌관련 인식의 사회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박찬걸(2011)은 학교체벌은 근본적으로 사라져야 할 부분이지만 체벌과 관련하여 체벌 허용의 기준점을 제시함에 교사의 간접체벌의 허용에 대한 목적 정당성과 체벌 관련 절차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 이후의 학교체벌과 관련해 간접체벌의 허용과 간접체벌의 범위, 절차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 조국(2013)의 연구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학생지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체벌 대책을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규의 미비와 정책수행의 실패 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제기한 연구도 있다(윤용규, 2012).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교사는 말한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학생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는 이러한 교사의 말을 인정한다. 우리 성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동안 힘으로 누르던 것이 아동들에게 분노가 되어 표출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 이유없이 친구를 공격하고 조금만 화가나도 참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등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는 부분적 해결방식이라고 본다.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혜 그원인을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훈육방식은 자녀의 심리와 사회적 능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아동발달의 기본적 원리를 중요하게 인식시키고 싶다.

첫째, 아동은 개인마다 다르다. 기질, 성격, 태도, 행동등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다. 개개인 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아동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 아동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양과 질도 중요하고 아동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한다.
셋째, 아동발달의 정서, 사회, 신체, 인지 영역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기쁜 마음이면 사회적 관계도 적극적일 수 있고 신체도 건강할 수 있으며 뇌의 기능

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아동발달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기지도 않은 아이가 걸을 수 없듯이 재촉하지 않는다면 학대도 줄어들 수 있다.
다섯째, 아동발달은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해간다.

이상의 발달원칙을 이해하고 각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주지한다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인지할 것이라생각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애정(2008). 아동기 부모의 훈육방식과 양육행동이 기혼여교사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주, 김정우(2014). 판례분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과 체벌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호 p33-53

양명자(2014).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은영(2013).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민(2015). 영아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폭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변호사 홍 관 표

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도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1호)으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국내법 상 아동학대는 ① 폭력 및 가혹행위와 ② 유기·방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폭력 및 가혹행위’는 ‘보호자가 아닌 성인’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고, 행위 대상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며, 폭력 및 가혹행위는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성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 다만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부가되어 있어,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유기·방임’은 아동의 ‘보호자’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도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조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14. 1. 28.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처벌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포함되었지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이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되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위반의 죄와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tr><th>「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위반
(제71조 제1항, 제17조)</th><th>아동학대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
(제2조 제4호)</th></tr>
<tr><td>주체 : 누구든지</td><td>주체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td></tr>
<tr><td rowspan="2">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td><td>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상습범)</td></tr>
<tr><td>마.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상습범)</td></tr>
<tr><td></td><td>마.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상습범)</td></tr>
<tr><td rowspan="2">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td><td>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상습범)</td></tr>
<tr><td>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td></tr>
</table>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상습범)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상습범)
	가.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상습범)
	하. 아동학대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
	나. 「형법」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1항의 죄(상습범)
	하. 아동학대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
	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상습범)
	하. 아동학대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상습범)
	나. 「형법」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1항의 죄(상습범)
	하. 아동학대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
	라. 「형법」 제283조(협박) 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상습범)
	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상습범)
	아.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의 죄(상습범)
	자.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상습범)
	차. 「형법」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상습범)
	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상습범)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상습범)
	나. 「형법」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1항의 죄(상습범)
	하. 아동학대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타.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상습범)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타.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상습범)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상습범)
	나.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1항의 죄(상습범)
	하. 아동학대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외>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외>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자가 아닌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여전히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한데 따른 차이점은 신고의무와 현장 출동 및 격리조치 등에서 나타난다. 구 「아동복지법」 제25조는 신고 의무 대상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은 2014. 1. 28.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고, 아동학대특례법 제10조는 신고 의무 대상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아동복지법」 제27조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 역시 2014. 1. 28.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아동학대특례법 제11조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을, 같은 법 제12조는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에 한하여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절차[53]가 적용된다.

3. 아동에 대한 폭력

국제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규범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20. 채택, 1990. 9. 2. 발효,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 11. 20.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같은 해 12. 20. 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 발효되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친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친아버지와 함께 훈육을 빙자하여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특별히 '양향의 이유' 중 하나로 이 사건 아동학대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모든

53)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이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특례법 상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절차는 아동학대범죄를 한하여 적용된다고 이해된다.

아동을 학대와 폭력,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합의되고 확인된 명제라고 판시하고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기도 하였다.[54]

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대'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아동학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등이 있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

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67 판결.

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 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악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 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 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조약감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y)인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반적인 해석의견인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55]를 통해 신체적 처벌[56]은 항상 굴욕적이고,[57]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그 수준 여하에 불구하고 합법화의 여지가 없으며,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이고, 국가는 이를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58]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일반논평 제13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서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59] 합법화의 여지가 없음[60]을

55) The right of child to protection from co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ticles 19, 28(2) and 37, *inter alia*).
56) 아동권리위원회는 위 일반논평 제8호 11항에서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야기하도록 의도된 처벌'로 정의하였다.(CRC/C/GC/8, para. 11.)
57) CRC/C/GC/8, para. 11.
58) CRC/C/GC/8, para. 18.
59) CRC/C/GC/13, para. 3(a).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폭력 가해자는 양육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동료, 낯선 사람들에 의한 폭력도 아동권리협약 제19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다.[61]

이와 같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가 아동학대를 정의하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치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합법화 여지를 열어놓은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4. 아동학대 통계에 관한 문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은 아동의 삶에 있어서 아동이 겪게 되는 폭력을 가정에서의 폭력, 학교에서의 폭력, 사회공동체에서의 폭력 등으로 나누기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사고로 이해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특히 통계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현황을 정리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문제는 실제 아동이 입고 있는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가 신고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통계청의 2013년 ‘연령별 시도 추계아동인구’에 의하면 2013년에 전국의 18세 미만 아동은 9,331,984명으로 추계되는데, 2013년 중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3,076건(일 평균 35.8건)이었고, 그 중 아동학대 판정 사례[62]는

60) CRC/C/GC/13, para. 17.
61) CRC/C/GC/13, para. 36.

6,796건(일 평균 18.6건)이었다. 추계아동인구 대비 신고접수 건으로 보면 0.14%(1,000명 중 1.4명), 추계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 판정 사례로 보면 0.07%(1,000명 중 0.7명)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를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63]의 1-5-48 '피해자 성별 연령' 통계와 비교해보면, 2013년 아동학대 판정 전체 사례 6,796건은 2013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등 강력범죄(폭력)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 중 피해자가 15세 이하의 아동이었던 건수인 7,374건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성학대와 관련된 건은 380건이었으나, 2013년 중 강간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건 중 피해자가 15세 이하의 아동이었던 건수는 그 5배가 넘는 2,019건이었다.

2014. 1. 28. 아동학대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하였을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 제27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상 범죄의 범위와 사실 통보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선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64]에 따라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정보

6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87면.

63)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은 2013년에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한 통계이다.

64)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은 사실 통보 대상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한정하여 사실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보호자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 사이에 아동학대 사실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 학교폭력통계와의 관계

아동에 대한 폭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취학연령 이상의 아동의 삶에 있어서 학교폭력 특히 교우, 선후배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4. 12. 22.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2019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 중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의 신고·상담 현황이 일 평균 220.2건으로, 2013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일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35.8건 보다 6.15배나 많은 수준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겪는 폭력 문제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학교폭력 통계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지난 2015. 2. 19.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를 중장기적으로 아동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전화로 기능을 확대·운영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다.

현장이 아동학대특례법에 던지는 질문: 경미한 아동학대, 범죄인가?

장영인 교수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왜 우리는 학대와 훈육의 갈등을 논하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어온 '체벌'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학대이며, 이제 '사랑의 회초리'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보호자(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벌은 여전히 '훈육'이라는 명분 하에 존속되고 있으며, 외부 노출이 잘 안 되는 만큼 심각한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다 결국 아동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비극이 최근 몇 년간 수차례 발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범죄'임을 선언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4.11.10.), 특히 가정사로 치부되어 온 부모들에 의한 체벌(학대)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하고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와 전문가집단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특례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왜 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나? 이번 학술대회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등'은 예전의 '강력한 조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움' '모호함'에 관한 논의이다. '보호자의 행위가 학대인지 훈육인지' '이를 판가름할 기준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법 적용 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지점'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대와 훈육의 갈등' 문제는 단지 초기개입 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대행위자와 사법경찰(또는 아보전 상담원)의 학대에 관한 의견상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데 관여하는 사람들

(사법경찰이나 아보전 직원)조차 학대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가 어린이집 훈육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때 이를 문의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전화(1644-9060)을 운영하는 것 등도 '모호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대처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훈육인가 학대인가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할 것인지 형벌 아닌 다른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토론자는 이 모호함이 특례법을 아동학대 현장에 적용하면서 제기된 새로운 고민거리(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즉 현실의 다양한 학대양상을 '범죄'라는 틀로 담아내야 하는 법규의 특성과 관련되며, '범죄'를 다루고자 하는 특례법으로 걸러지지 않는 다양하고 폭넓은 '학대'에 대하여, 사법적 접근을 보완할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특례법의 효과와 특징

이상의 쟁점에 대하여 특례법의 특성에서부터 그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

특례법 시행 6개월 동안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최은주, 장화정 발표문), 이는 특례법이 어떤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효과적인지 잘 보여준다. 물론 강력한 조치들은 구체적인 처벌규정의 미흡으로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윤진영 발표문), 신고건수나 격리조치 등이 증가하고, 아동안전을 우선시하는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등으로 아동의 안전보호장치가 강화되었으며, 과거에는 훈육으로 치부되고 개입이 어렵던 부모들의 학대행위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최은주 발표문).

이러한 강력한 개입은 그간 법률에는 있었으나 그 세부규정의 부재 등으로 현장에서 무력했던 보호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특례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범죄'로 간주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첫째, 신고를 112(경찰)로 통일하고, 초기대응부터 사법기관(경찰)을 개입시켜, 공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학대를 염두에 두고, 강력한 조치와 형사처벌을 하게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과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조사와 보호 및 격리조치 등에서 법적 권한이 취약하거나 모호한 것과 대비된다.

둘째, 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는 거의 대부분 형법 상의 저촉행위이지만,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도 범죄로 포함되어 있다(제2조). 이 금지행위에는 아동매매나 성학대,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이외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장하면 거의 모든 학대와 방임이 범죄가 될 소지도 있다. 이번 학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러한 광범위한 학대행위를 '범죄'개념으로 규정하는 것과 연관된다.

셋째, 특례법 이전의 복지적 접근의 한계, 즉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인한 개입의 좌절이나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서 처벌뿐만 아니라 교육과 상담등의 다양한 강제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과거 '잘못된 양육행동과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부모교육/상담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보호명령 등의 징벌적 접근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장화정 발표문 참조). 즉 경미한 학대라도 일단 '범죄'로 간주한 다음, 그 처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경미한 학대'와 이에 대한 '형벌이 아닌' 조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학대와 훈육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토론자는 이번 주제인 학대와 훈육의 갈등이라는 혼란은 이러한 특례법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특례법은 경미한 학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논의대상이 되는 행위 중 무언가 상이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현실에서는 훈육일지라도 그 방식이 부적합하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학대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하

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학대인가 훈육인가' 묻게 된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를 '훈육'이라고 우기는 학대행위자를 제외하고, 전문가들은 학대인지 훈육인지 구분하는 것이 대부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훈육의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목적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훈육은 학대이기 때문이다. 미약한 체벌이라도 그것은 명백히 학대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훈육이 학대일지라도, 이것이 모두 '범죄'--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토론자는 우리들이 고민하는 '갈등'과 혼란은 실은 '학대와 훈육의 갈등'이 아니라, '학대'와 학대'범죄' 간의 모호함과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실의 생활에서 잘못된 훈육을 하는 보호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행위가 학대인가 학대범죄인가라는 점이다.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대응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는 범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사안에 관한 규정과 대응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번 학회의 관심사는 중대범죄가 되는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이다. 특례법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여, '경미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하거나(서울 중앙지검 보도자료),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 관계를 회복과 원가정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화정 발표문). 즉 특례법은 '경미한 학대를 경미한 학대범죄'로 간주하고 개입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소관의 조치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나?

첫째, 학대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개입하지만, 결국 '범죄'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그 행위가 경미할 지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면, 범죄자로 간주되어 사법절차를 밟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비범죄자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되는 비형벌의 조치들--임시조치,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형사법원의 형사처벌과 달리 가정법원의 조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도 사실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배경요인이다.

범죄가 아닌데, 왜 범죄로 다루어야 하는가? 경미한 학대를 범죄가 아닌 일

반 학대로 분류하고,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혹시 처음부터 범죄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은 학대행위자들에게 당신들의 행위는 범죄이지만 (이번만은 관대하게) 형벌을 가하지 않으니, 그 경고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더 이상 학대를 하지말라는 예방효과를 의도한 것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의 경고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경미한 학대에 대해 이를 범죄로 간주하고 경찰개입에서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이어지는 접근방식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과기록도 남지않는 가정법원사건으로 다루어진다 할지라도(또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학대행위혐의자 특히 부모들에게는 '범죄'행위에 관여되었다는 낙인을 줄 수 있으며, 교육효과보다는 거부감이나 반발이 커질 소지가 높다. 더욱 중요한 점은 과연 그러한 사법절차의 경험이 부모의 잘못된 훈육방식을 수정하거나 자녀와의 원만한 가족관계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이다. 부모행동수정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등을 특례법처럼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절차의 일환으로 다루지 않고 강제할 방도는 없는지, 선진국의 바람직한 선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는 강력한 조치로 교육이나 상담을 강제하기에 앞서, 부모와의 파트너쉽을 중시하여 부모와의 협의나 약속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 그 다음 조치를 취해나가는 예도 있다.

셋째, 모든 학대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적극적이고 전면적 개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행정기관(예:아동복지담당공무원)을 보조적 지원자로서 역할하게 하고, 그 전문적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경미한 사건에의 경찰개입은 범죄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4.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분과 상이한 접근의 필요

특례법이 아동학대사건을 모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법개입은 '아동학대는 범죄'임을 전제로 하여 시작된다. 보호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그 대상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이다. 즉 특례법에 의하면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법원 소관의 아동보호명령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도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다.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훈육이 학대인데, 이러한 학대

를 법적으로 모두 '범죄'로 정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범죄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개입에 앞서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 학대라고 판단되면, 굳이 범죄처벌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례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행위가 다양하면 대응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응(조사, 방문, 지속적 관찰과 상담 등)이 필요한데, 특례법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범죄'로 규정될 때 아동학대에의 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범죄 아닌 경미한 학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

경미한 학대에 대한 개입은 그 목적이 '보호자의 행동교정'으로서, 심각한 학대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범죄와 범죄 아닌 학대를 달리 간주하고, 경미한 학대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부모기능의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제안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오늘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아동권리학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와 훈육 관련 네 분의 발제문도 잘 들었습니다. 경찰청의 윤지영 경감님께서는 이러한 아동학대의 현장 대응과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의 실제, 황은영 검사께서는 아동학대의 법률적인 의미를, 최은주 부장판사께서는 200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아동학대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화정 기관장님께서는 아동학대 관련 사회서비스와 법의 변천 및 성과와 한계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2012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아동학대(공공안전) 관련 연구를 힘들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아, 그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럼, 아동 발달과 가족을 전공한 정책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II. 최근 아동정책(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동향과 성과

2014년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의 비전은 더 나은 내일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 목표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시안; 2015~2019)에서는 행복한 아동과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기반 조성과 아동 행복도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발달, 생존, 보호,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보면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보람과 가슴이 벅참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소득 2만 5천불을 능가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과 함께 급급한 현시적 대책만이 아닌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13년 '인권통계'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는 신체학대, 정서학대와 방임 사례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서 그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신고 등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 9월의 아동학대 특별법은 아동학대 관련 고민해 오던 많은 분들의 고민을 덜어 준 것은 틀림없으나 앞으로 아동권리와 행복을 목표로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봅니다. 특히, 친권제한에 대한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특별법으로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게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학대 환경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임시조치 이후 미성숙하고 학대적인 친권자인 부모나 양육자와 다시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상쇄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장화정 기관장께서 언급하였지만, 학대 행위자들에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양육자들에게 양육태도와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기의 애착이 이후의 대인관계와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아이는 표현능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미숙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이 감정을 지배하는 뇌의 부위에 저장되어 이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학대의 경험은 아이의 뇌발달, 인지발달과 정서발달,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 방법과 뇌과학의 발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시기의 아이의 학대 경험은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많은 가해자들은 이를 모를 수 있으며, 어쩌면 그들이 이러한 상처를 먼저 경험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도덕을 익히고 공감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그런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따듯함과 아이의 욕구에 민감함이 양육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양육의 기술은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따듯한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그러한 부모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훈육에는 부모의 태도와 철학이 깊이 관련되어 있고 사랑으로서 행동의 통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통제에는 폭력이 수반될 수 없으며 그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우선입니다. 학대가해자인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경험이나 지식이 잘못된 방향이거나 훈육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III. 향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

학대와 훈육을 논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부모와 성인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헌장에 의하면 아동은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가 있고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또한 심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과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와 아동 초기의 아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고 보살핌을 받을 때 우리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전체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더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애정과 물질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될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입장이 아닌 아이 최우선의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양육 기술이나 돌봄에 대한 교육 또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핵가족 제도 하에서는 가족이 예전처럼 많은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없으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와 신고 및 예방 방법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사회적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인식 확대가 되도록 합니다.

넷째, 학대아동과 가족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자신이 서비스를 선택한다거나 부모가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전문 영역을 지닌 경찰, 교수, 전문가, 아동발달 전문가 등이 모두 한 팀으로 구성되어 보호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아이를 보호하고 치유하는데 주력합니다.

다섯째, 권리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아동권리 실현과 옹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한다. 아동의 권리나 학대 예방과 같은 주제들이 정치적 현안이나 일시적 주제가 아닌 정책차원에서 항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아동분과 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개입현장에서의 학대와 훈육의 갈등과 기준에 관한 토론문

채 혜 정
(명지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객원교수, 한국HARP심리연구소장)

가정과 육아지원기관 내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쏟아지면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뿐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아동을 과연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 2015년 한 해를 시작했었다. 이러한 우려와 관심은 작년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보다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학대예방의 보다 근원적 측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아동권리학회에서는 올 한 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찾고자 정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동학대 개입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내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일련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다시 점검하고 논의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는 마음 무거우면서도 매우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본 토론자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에 덧붙여, 20년 넘게 아동을 보아온 놀이치료자로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학대 판정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성 및 부모교육상담명령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심리치료 관점에서 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전 어머니들은 아이가 걸어가다 넘어져 울기 시작하면, 아이가 걸려 넘어진 돌맹이나 땅을 치면서 "땟지땟지"하고 혼내주자고 하였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보면, 넘어진 아동은 넘어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고통과 희생당한 것의 책임이 땅이나 돌맹이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자기 비난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중지하고 넘어져서 아픈 것의 원인이 땅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다(Jamsid,

2006).

이 경우 성인들은 아동에게 희생당한 것에 대한 설명과 의미를 제공한다. 그 의미란 땅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서 넘어져 다쳤으므로 땅이 나쁜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땟지'하고 혼내줌으로써 역할의 역전이 이루어진다. 즉, 넘어진 아동은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고통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혼내준다. 어떤 면에서 그 아동은 외상을 통합하고 극복했다.

이러한 모습은 학대당한 아동의 심리치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과 흡사하다. 외상후 놀이치료(Post Traumatic Play Therapy)는 학대를 당한 적있고 현재 외상후 사건이나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치료이다. 특히 외상후 놀이(PTPT)는 정신적 상처를 겪은 아동이 치료동안에 보여주는 특별한 종류의 반복적 놀이를 말한다. 외상후 놀이는 치료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외상을 재상연하여 외상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점차 외상에 둔감해지면서 아동은 자아 숙달감을 획득하게 된다.

대개 아동은 당했던 일들과 감정을 놀이로 표현한다. 놀이를 하는 동안 아동은 외상을 반복 재연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자는 아동이 받은 상처, 수동성, 무력감들을 서서히 뒤집으면서 부정적인 심리적 상처와 결과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놀이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은 놀이를 통해 희생당했던 위치에서 반대로 공격당했던 만큼 갚아주기도, 혼내주기도 하고, 그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상을 중화(neutralization))하는 것으로 아동의 성격 내에서 외상을 통합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치료자는 아동에게 공격자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자신이 당한 힘든 것을 갚아주도록 격려한다. 그러고 나면 아동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통합할 수 있게 되고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한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de-splitting procedure) 자아의 힘을 회복한다.

이처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은 아동 자신이 아닌 학대자의 학대'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대로 인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아동자신과 분리하는 것이며,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자신이 받은 상처의 책임을 자기 비난으로 하기 쉽고, 죄책감과 자신을 분리하기 어렵다. 특히 애착을 맺은 자신의 부모가 훈육목적으로 심하게 혼내서 심리적 외

상을 입는 경우, 심리치료에서 필수적인 죄책감의 분리도, 감정을 통합하는 과정도 더 어려워 질수 있다. 학대받은 시기가 영유아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사고의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기의 아동은 부모가 아프거나 이혼하여도 자기 때문이라는 사고를 갖게 되기 쉽다. 유아는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했어도 자기가 좀 더 잘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노를 승화시켜 무력감과 수동성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치료과정에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 의한 심리적 학대 후유증 또한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놀이치료자로서 부모의 방임과 유기가 심지어 성학대보다 더 외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여러 번 있다. 또한 여러 치료자들이 부모의 훈육을 핑계로 한 자녀학대가 타인에 의한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잣대와 기준은 엄격하고 보다 아동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대라고 명명되지 않는 한 아동은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을지도, 학대하는 부모를 미워할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썩여 부모가 그랬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또 자녀를 학대할 것이다. 때문에 본 토론자는 부모라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관용은 훨씬 더 심각한 책임과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학대판정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전 확보

심리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대판정과정에서 아동은 두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학대자체로부터의 후유증 뿐 아니라 이런 사태를 만든 당사자가 아동자신일지 모른다는 압박과 어찌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대한 고통말이다. 이런 고통은 아동으로 하여금 목격진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학대 판정과정과 아동학대 판단여부에서 아동안전이 최우선되기 위한 외국(미국, 영국,캐나다)의 노력을 살펴보면, 학대받은 아동 당사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섬세하게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접근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학대를 받은 아동은 PTSD(Post Trama Stress Disorder)를 겪을 수 있기에 이를 전제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판정과정에서 아동은 각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1) Interview support (2) Pre-trial support (3) Court witness support (Research: Pretrial/Court Support undertaken by same person)

특히 아동은 학대받은 당사자로서 아동증인 진술을 하게 되거나 격리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련의 개입과정과 사법 판정과정에서 다양한 지지체계를 반드시 제공받는다. 아이가 불안해져 진술을 못하게 되는 등 원할한 조사나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와 함께 아동증인목격자로서 보호받고 조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아동이 얼마나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받는다. 부모에게 떨어져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관련 현장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자 처벌을 위한 증거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심리치료 및 아동보호라는 점을 교육받고 숙지하며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의 라포형성을 충분히 함으로써 심리적 피해를 줄이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경찰 및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경우도 아동학, 아동복지, 아동발달과 같은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아동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학대조사팀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아동을 잘 알고 있는 교사, 놀이치료사와 같은 아동심리치료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룬다. 조치과정에서 학대받은 모든 아동에게 트라마 및 PTSD를 다룰 수 있는 아동심리치료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있고 주마다 다르지만 10회 정도의 상담을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동의 경우, 특별한 도움이 요구되는 아동인지 파악하게 되는데, 즉, 아동이 분리불안이 있는지, 공황장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에게 불안하지 않고 보다 친숙한 법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물론인데, 인적, 물리적 환경을 구비하도록 할 뿐 아니라, 아동의 낮잠이나 식사시간을 피하여 시간을 정하도록 한다든지, 판사가운을 입지 않는다든지, 증언을 하게 되는 아동을 돕기 위해 친숙한 사람, 곰인형, 장난감상자, 치료과정에서 라포형성을 한 애완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기도 한다. 아동증인목격센타(Child Witness

Centre)와 아동상담센터가 연계되어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도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심리치료사 배치 및 외부 심리상담소와의 연계를 더욱 늘리는 한편, 아동입장에서의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전문적으로 갖추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명령 :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한 첫걸음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은 반가운 일이나, 결정사항에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명령은 제외되어 학대행위자인 부모당사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가정복귀가 되도록 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훈육상황은 신체학대의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정되어야만 하며 교육되어져야 한다. 실제 훈육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어렵기 때문에 모의가정사정(HSA:Home Simulation Assessment)가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적인 문제상황에서 아동관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부모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10가지 과업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분노, 불안의 정도가 수집된다. 부모와 유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정서와 자극의 특성은 사정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수에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은 중요한 영역이다. 최근 아동학대 위험사정에서 부모의 감정이입이 의미있게 고려되고 있다. 감정이입은 2개의 학대 위험요인(인지된 통제의 상실과 부모우울)을 예견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도구는 아동학대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자료로서도 유용하다.

한 학대 예방 프로젝트에서 부모와 유아기 자녀와의 애착행동을 사정하고 몇 가지를 훈련시켰는데, 미소, 애정담긴 신체접촉, 저항하지 않는 신체접촉, 눈높이 맞추기, 말투, 발성, 놀이지도 등이었다. 애착을 평가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입장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지표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특히 혼란된 애착유형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학대수준의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좀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 가운데서 아동 초기에 가장 위협적으로 발달적, 정서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심리적인 부재'-무반응, 분리, 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의 양상-였다(Egeland & Erickson, 1987). 따라서 자

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후속조치일 것이다.

올 해 3월 서울시에서는 놀이치료 및 보육현장 경험을 갖춘 아동인권 상담전문가 한 명씩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각각 배치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 및 부모를 위한 갈등상황 대처방법과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어린이집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부모와 교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은 적극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면서 아동인권 옹호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군구에도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전문가의 역할이 어린이집의 사례관리 뿐 아니라,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훈육지도, 아동 및 부모의 심리적 지원 등에도 확대되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상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 판정 현장에서 아동이 좀더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보아야 할 점을 몇 가지 덧붙여 제언하였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일선의 아동학대서비스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발제자들의 원고를 통해 한층 더 알게 된 시간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훈육을 명목으로 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런 귀한 토론 시간을 내준 한국아동권리학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참고문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심화교육 자료집 (2014,12).

Helping a child be an Eyewitness in Court : Implications for Counselors(2014). Bitna, Kim Ph.D. Department of Criminology,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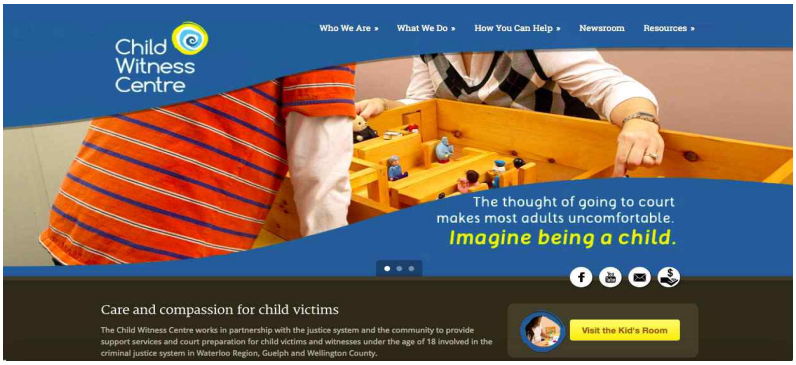
Helping a Child be a Witness in Court(2011). Allison Cunningham & Lynda Stevens.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강경란·이완정

권미나·이진숙

김수정

송주연·조준오·강인설

이지은·이완정

전가일

조여울·권희경

조여울·권희경

조용남

홍애리·최우수·김도영

영유아보육프로그램 활동목표의 내용요소 및 진술방법 분석

강경란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석사)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은 교사가 보육계획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지침을 제공하며, 교사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보육의 연령과 보육과정의 영역에 따라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유아프로그램에서도 단위 활동마다 활동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교사는 목표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활동 후에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명시된 목표가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에 포함된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읽는 교사들마다 이해하는 정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프로그램 활동목표의 내용요소와 진술방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 보급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0~2세)'과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5세)'의 총 26권에 제시된 활동목표를 전수조사하여 수집하였다. '내용요소'와 '진술방법'을 분석도구로 선정하여 활동목표를 진술한 1개의 문장에 대해 문맥단위(context uni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영아 및 유아의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활동목표의 '내용요소'는 총 8,559개의 활동목표 중 '기술'의 내용을 포함한 진술문이 5,316개(6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식', '가치 및 태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활동목표의 내용요소 하위항목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2 =3,415.24, p=.000), 그 영향이 영아 및 유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영아프로그램의 경우 총 1,649개의 활동목표 중에 '기술'내용을 포함한 목표 진술문이 1,164개(70.6%)로 가장 많고, '가치 및 태도',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술방법'에서는 '표현목표'를 나타내는 진술문이 4,294개(5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해결목표', '행동목표', '일반목표'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술방법 하위항목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2 =2,991.89, p=.000), 영아와 유아 모두 '표현목표' 진술문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진술방법 하위항목의 순서는 영유아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Ⅳ. 결론

내용요소와 진술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교사가 지식이나 개념을 전달하기보다 영유아가 자발적인 선택과 탐색으로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돕는 교수학습의 방법과 영유아의 탐색과정과 다양한 표현을 중시하는 교육적 태도가 활동의 목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프로그램의 활동목표 전체를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서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 진술문에 담긴 내용 및 진술방법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영유아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할 때에는 활동 목표 진술시 영아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요소에 중점을 두어 융통성 있게 기술하는 방법과, 목표를 진술하는 방법에 맞게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 : 표준보육과정, 영유아 프로그램, 활동목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의 관계

권미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이진숙(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기본심리욕구란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기본심리욕구만족은 삶의 만족감을 가져오지만 만족되지 못할 때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성장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욕구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행복감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양육행동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J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에서 5,6학년 아동 2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연구도구: ①부모양육행동-이선희(2012)의 학령기 자녀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온정, 논리적 설명, 간섭, 강압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특징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기본심리욕구-Ryan과 Deci의 기본심리욕구 척도에 근거하여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본심리욕구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③행복감-김연화(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행복감과 정의적 행복감 하위척도를 합산한 점수를 행복감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3)자료분석: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변인 역할을 살펴보면 1단계, 독립변인인 온정, 간섭, 강압 각각은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단계,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3단계, 온정, 간섭, 강압 각각과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두 변인 모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인인 온정, 간섭, 강압의 영향력은 2단계보다 감소되었다(β = .61 → β = .28, p < .001, β = -.47 → β = -.25, p < .001, β = -.44 → β = -.21, p < .001). 이는 온정과 행복감, 간섭과 행복감, 강압과 행복감 사이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부분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논리적 설명의 경우 1,2단계는 위 독립변인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만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논리적 설명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β = .35, p < .001 → β = .04).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완전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Z = 7.77, Z = 6.50, Z = -5.09, Z = -5.25,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기본심리욕구가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Ⅳ. 결론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켜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을 위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 아동, 부모 양육행동, 기본심리욕구, 행복감.

유아의 수면 습관이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Ⅰ.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은 필수적인 권리에 속하며 권장되어야만 한다. 특히 유아기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기상시간, 취침시간, 야간 수면양, 낮잠양, 총 수면양, 숙면 여부 등의 수면 습관이 유아의 인지 발달,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명확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수면 습관과 인지 발달, 정서 및 행동 문제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아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 등의 통제 변수가 포함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5차년도에 응답한 만 4세 유아 자녀를 가진 1,703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면 습관과 인지발달, 정서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신뢰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취침시간이 늦을수록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공격 행동, 수면문제, 총 문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은 유아의 인지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상시간은 수면 문제를 제외한 정서 및 행동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야간 수면양이 증가할수록 외현화 문제, 공격 행동, 수면 문제, 기타 문제, 총 문제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수면양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반응성, 신체증상, 수면 문제, 총 문제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야간 수면양, 낮잠양, 총 수면양은 유아의 인지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낮잠양은 정서 및 행동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숙면을 한 유아가 숙면을 하지 않은 유아보다 인지 발달 수준이 높았고, 내재화 문제, 정서적 반응, 우울·불안,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 공격 행동, 수면 문제, 기타 문제, 총 문제 행동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유아들이 좋은 수면 습관을 형성하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는 수면이 유아의 인지, 정서, 행동 등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 야간 수면의 중요성과 권장되어지는 야간 수면양과 총 수면양,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정에서의 수면 리듬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만 4세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는 낮잠 시간보다 야간 수면 시간을 늘려주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유아가 혼자서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꼭 함께 자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아들이 밤에 잠이 깼을 때 애정 어린 돌봄을 하는 등의 적절한 부모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key word: 수면 습관, 수면 스케쥴, 수면양, 수면질, 인지 발달, 정서 및 행동 문제

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와 삶의만족도가 일몰입에 미치는 여향

송주연(춘해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준오(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후연구과정)
강인설(춘해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연구목적

직업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Csikszentmihalyi (1975)가 제시한 몰입(flow)이다. 이러한 몰입경험은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나타난다고 알려져(Csikszentmihalyi & Ledevre, 1989; Fave & Massimini, 1988) 일 몰입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몰입은 외부적 환경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발생되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관계망 속에서의 주관적 지각인 사회적 지지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는 유아교사의 일 몰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이 유아교사의 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교사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에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도구를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Bakker(2001)가 작업 장면에서의 몰입(flow)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Bakker, 2008) WOLF (WOrk-reLated Flow inventory)이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일몰입에 26.1%의 영향력을 지니고, 이에 삶의 만족도가 첨가되면서 1.5%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27.7%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64.8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회귀모형은 적합하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인 정보적지지가 일몰입에 25.3%의 영향력을 지니고, 이에 삶의 만족도가 첨가되면서 1.5%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26.9%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115.2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회귀모형은 적합하게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삶의 질, 자아성장 뿐 아니라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이 고려되어져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동료교사, 원장, 가족, 학부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며, 다양한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ey word: 일몰입,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자유선택활동을 위한 교사의 흥미영역별 교수방법 연구

이지은(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석사)
이완정(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연구의 필요성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탐구와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시간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에 항상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제공해 주어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흥미영역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는 융통성 있게 보육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육 및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가 흥미영역별로 어떤 교수방법을 사용하는지 관찰하여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집된 3개 어린이집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영유아의 자유선택놀이시간 중 나타나는 교사의 교수방법을 관찰하기 위해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비방해적 자연관찰 방법으로 3분 간격으로 30초의 '관찰창'을 하나의 교수법 단위로 기록하였다. 관찰도구로는 선행연구(윤미라,2004 외)를 참조하여 성숙주의, 행동주의, 인지발달주의 교수방법의 세 하위변인별로 총 11개의 교수-학습방법을 구성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빈도를 산출하고,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χ^2-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유선택활동 시간 교수방법은 전반적으로 행동주의 교수방법보다는 성숙주의와 인지발달주의 교수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영아반 교사는 성숙주의 교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유아반 교사는 인지발달주의 교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역할놀이 영역 및 쌓기놀이 영역에서는 성숙주의 교수방법이 많이 나타난데 비해, 유아반의 과학영역이나 조작영역에서는 인지발달주의 교수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교수방법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흥미영역별로 교수방법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의 교수방법은 행동주의 교수방법보다는 성숙주의와 인지발달주의 교수방법이 많으며, 영유아의 연령 및 흥미영역별로 교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key word: 자유선택활동, 교수방법, 흥미영역

영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의 특징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3차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분석을 기초로

전가일(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Ⅰ. 연구목적

영유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 연구는 주로 영유아 교실에서 일어난 교육활동을 수업으로 보고 “잘 가르치는 일”의 특징을 탐색. 그러나 영아의 발달 특징으로 인해 영아의 교육활동은 다른 어떤 수업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내포하므로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영아의 교육활동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이 연구에서는 3차 표준보육과정 분석을 통해 영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의 특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피고자 함.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①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3차 표준보육과정 영아 프로그램의 공통 특징은 무엇인가?

②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영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수집자료 :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내용과 방법

자료의 종류	자료 내용	수집방법
① 참여자 보고서	3차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분석 보고서	수업 종강 시 학생들이 제출한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수합
② 참여자 면담	좋은 영아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자들과의 면담	학생들과 초점집단 면담(F.G.I.) 실시.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체 내용 전사 (지금까지 총2회 실시되었으며 1회 예정)

3) 자료의 분석과 해석 : 에믹 코딩 후 영역 분석

Ⅲ. 연구결과

1.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3차 표준보육과정 영아 프로그램의 공통 특징

1) 충분한 탐색 격려 2) 일상생활의 연장으로서의 교육활동 3) 영역 통합성 4) 개별성

2.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영아 교육활동

(1) “목표에 부합하는” and “목표를 고집하지 않는” : “교사의 교육목표에 부

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졌으나 동시에 활동이 교사의 계획된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이 있는 활동.
(2)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and "영아의 의견이 반영되는" : 영아를 위한 환경을 세심하게 계획하는 동시에 "영아의 반응과 의견이 반영되는"활동이 좋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특징.
(3) "영아가 흥미 있어 하는" and "교사가 영아처럼" : "영아가 활동의 주인공이 되는" 활동. 동시에 "교사도 즐거운", "교사가 영아처럼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좋은 교육활동이라고 인식.
(4) "교사의 좋은 발문이 있는" and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 답이 정해지지 않은 교사의 "열린 발문"이 있는 활동. 동시에 "교사가 영아의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활동이 좋은 활동이라고 인식.
(5) "개별적인" and "다른 영아도 함께 할 수 있는" : 흥미를 가진 영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별적인" 활동 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좋은 활동의 특징으로 인식함.

Ⅳ. 결론

1.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3차 표준보육과정 영아 활동의 공통점은 충분한 탐색의 격려, 일상의 연장으로서의 교육활동, 영역통합성과 개별성에 대한 지향.
2. 영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의 특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교육목표, 활동의 구조화, 주도성, 개입, 개별성의 5가지 각 영역 안에서의 대조적인 측면의 인식을 통해 변증법적인 긴장을 드러내고 있음.
3) 영아를 위한 좋은 교육활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좋은 활동을 위해서 교사는 각 주제 영역에서 정과 반의 긴장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 함.

Key Word: 영아, 교육활동, 예비교사, 표준보육과정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여울(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권희경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

Ⅰ. 연구목적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책은 언어능력과 상상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교육적 매체이다. 북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은 그림책과 교과영역이 연계되어 실행된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다양한 교과영역과 연계되어지는 만큼 교육적 효과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그림책과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그림책 관련 문헌고찰을 토대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추천도서 140권 중 만2-3세 15권, 만4-5세 15권을 선정한 후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2015년 3월 13일~6월 19일까지 15회차 실시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충청북도 C시립도서관에서 실시되는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인 '책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x^2검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의 구성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의 구성은 '그림책 감상하기', '그림책과 관련된 일상경험 회상하기', '미술활동하기', '활동 평가하기'의 단계로 설정하였다. 미술활동의 내용은 평면미술5가지, 조형미술5가지, 감각미술5가지로 총 15가지 활동을 계획하였다.

(2)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인 간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x^2검증을 한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에 대해 느끼는 정도' 항목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8.14, df=3, p<.05).

Ⅳ. 결론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부모의 학력이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항목의 백분율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한 즐거움과 재미를 얻길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활동의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림책과 미술활동이 연계됨으로써 얻는 상승효과(相乘效果)에 대해 전달 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key word: 그림책, 북스타트, 미술 프로그램

저소득가정 만3세를 위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조여울(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권희경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

Ⅰ. 연구목적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은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야 한다(Bredekamp & Copple, 1997).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책 경험은 전인적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인 만3세 유아에게 언어적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정서를 전달하며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림책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림책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증가했지만, 저소득가정 부모는 그림책을 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황현이,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방문 형식의 일대일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적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저소득가정 만 3세 유아를 위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저소득가정 만 3세유아를 위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그림책과 관련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86권 중 저소득 가정 유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9권을 선정한 후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북도 C시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20%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만3세 유아 29명에게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간 프로그램을 일대일로 적용하였다. 사전・사후검사는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로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저소득가정 유아를 위한 일대일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발달의 5개 영역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교육내용의 구

성은 ‘그림책감상하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그림책을 활용한 확장활동하기’ 이며 각 프로그램은 그림책 감상단계-그림책 회상단계-확장활동단계-평가단계로 이루어졌다.

(2) 저소득가정 유아를 위한 일대일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본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7.08$, $p<.005$). 이를 통해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만3세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개발된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이 저소득층가정 만3세 유아에게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만3세 유아의 발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와 함께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그림책, 그림책 통합 프로그램, 저소득가정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조용남(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

Ⅰ. 연구목적

드림스타트 사업이 정책설계 단계부터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입안·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사업운영을 잘하는 지역과 미흡한 지역으로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드림스타트 사업의 설계 당시 정책 환경과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인터뷰와 표적집단면접(FGI)을 2013년 9월~10월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자료 분석은 2013년 1월~3월까지 실시한 131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의 사업 평가결과 자료 중 상위 20% 지역과 하위 20% 지역의 평가결과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책분석

(1) 드림스타트 사업설계 당시 사회·정책적 환경 : ① 2004년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민간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기반조성: 2004년 '탐사기획-가난에 갇힌 아이들' 연재를 계기로 빈곤아동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언론,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we start 운동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해 5월에 '위스타트(we start)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되었다. ② 드림스타트 사업의 국가정책 태동: 2004년 정부는 빈곤 아동을 위한 <빈곤아동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아동문제와 보육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당차원에서도 <000당 드림스타트 기획단>을 발족하여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2006년 정부(보건복지부)는 위스타트(we start) 운동 모델을 20개 보건소를 통해서 시범 운영한 후, 2007년 정부정책인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정부사업 추진 2년째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정과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민간차원의 위스타트 운동이 정부정책으로 선정, 추진되는 데에는 당시

정부의 정책기조(사회투자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및 문제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해 관계자들은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대상아동 발굴 및 배치 관련한 갈등, 같은 대상에 대해 여러 기관들이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내용 및 방법에 관해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및 사업대상의 한계로 인한 문제, 실무자의 전문성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전달체계의 통합, 조정기능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자료 결과 분석: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20%인 '가'등급 지역과 하위 20%인 '라'등급 지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유형별, 평가분야별 차이

구분		전체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종합소견
		104(100)	17*(100)	27(100)	21(100)	23(100)	2(100)	5(100)	5(100)
전체	가등급 (a)	83.68 (80.46)	18.18 (86.59)	21.19 (78.49)	15.62 (74.38)	18.16 (78.97)	1.61 (80.74)	4.76 (95.19)	4.15 (82.96)
	라등급 (b)	55.24 (53.11)	13.56 (64.57)	15.65 (57.95)	8.57 (40.80)	9.23 (40.14)	1.56 (77.98)	3.85 (77.00)	2.82 (56.48)
	증감 (a-b)	28.44 (27.35)	4.63 (22.03)	5.54 (20.54)	7.05 (33.59)	8.93 (38.83)	0.06 (2.76)	0.91 (18.19)	1.32 (26.48)
	t-test	16.30***	6.19***	6.18***	12.02***	10.30***	2.11	4.81***	6.54***

*** $p<.005$, *** $p<.001$

Ⅳ. 결론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책설계부터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분석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향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업 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간부문에서 출발한 운동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뒤 정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풀어가는 방안이 향후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제시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운영 평가결과 분석에서는 지역유형별로 상·하위 지역 간 평가분야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대도시 자치구와 대도시 기초단체의 경우 환경이나 조직 및 인력, 지역자원이나 자원봉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비슷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이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key word: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정책 추진과정,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 기초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개발

홍애리(호서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최우수(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졸업)
김도영(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에 기초한 다양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갖는 음악 활동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에서도 쉽게 음악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교육 방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 기초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총 50명(경력 5년 이하 30명, 경력 5년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음악 자료 및 프로그램 활용 실태, 요구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음악 활동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재, 악보 및 음원, 수업 계획안, 그림 동화 및 시각 영상, 교재교구 총 5가지의 음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첫째, 누리과정 생활주제와 기본생활습관을 기본으로 유아들이 직접 만든 동요를 모아 교재를 제작하였다. 둘째, 생활주제에 적합한 동요, 악보와 음원이 없는 동요를 모아 악보 및 음원을 제작하였다. 셋째, 교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요와 연계하여 언어, 조형, 신체, 과학 등의 타 교과 수업계획안을 제작하였다. 넷째, 통합 활동을 위한 그림 동화 및 시각 영상 자료를 제작하였다. 다섯째, 유아가 직접 악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악기 만들기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 시에 활용 가능한 교구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활용 단계는 생활주제와 관련한 마인드맵, 동시 만들기 활동, 동시에 멜로디를 붙여 동요 만들기 활동, 음악 관련 교재교구 제공, 제공된 자료를 이용한 음악 활동, 타 교과 연계 활동 순으로 이루어졌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 기초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은 유아가 직접 노래의 기초가 되는 동시 만들기, 가사에 멜로디 붙이기 활동에 참여하여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창의성과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교재, 악보 및 음원, 수업 계획안, 그림 동화 및 시각 영상, 교재교구 등 음악 관련 수업 자료를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음악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현장에서 유아들이 음악적 예술 활동을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누리과정, 예술경험, 음악활동 프로그램

2015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롤로그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등, 그 기준을 현장에서 찾다.

발행일:2015년 4월 24일
발행처:한국아동권리학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806호
Tel:032-348-8978 Fax:032-349-8978
E-mail:kccr@hanmail.net
Homepage:www.kccr.or.kr